

중소전기공사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지침서



안 내 사 항

- 본 매뉴얼은 중소전기공사기업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및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업체별 사업장 형태, 규모 등 자체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 본 매뉴얼은 2024년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기획처 법령제도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711-4035 / 이메일) yschoi_1027@keca.or.kr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장 현 우 입니다.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전기공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근 지속된 국제정세 불안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도 묵묵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오늘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기업 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업계 피해 예방을 위해 협회는 지침서 제작·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회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업계가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그동안 준비했던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 수정·보완한 끝에 회원사가 알기 쉽고 이행하기 쉬운 본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집행부 임원님들과 시·도회 회장님들.
그리고 제작 자료를 감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님과 이동현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지침서가 우리 전기공사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기공사업계 맞춤 가이드북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여 기업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어 재해 없는 전기공사업계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장 현 우



목차

I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2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
3. 적용범위·시기 및 양벌규정	4
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5
5.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1
6.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11
7.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8.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14
9.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14

II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체계도

1. 안전·보건 확보의무(요약)	16
2.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체계도	17
3. 중대재해처벌법 Q&A	18

III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및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매뉴얼	26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7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7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28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29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3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31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32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33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34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35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6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37
4.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8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38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39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40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41

IV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필수 이행 사항 요약 안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44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45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시행령 제4조 제2호)	46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47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49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51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시행령 제4조 제6호)	54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55
8.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 (시행령 제4조 제8호)	57
9. 도급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58
10.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2호)	60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사항 등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61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	62
1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	63

V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식 및 참고자료	6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총괄표	67
[서식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69
[서식 2]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게시 대장 및 제·개정 관리 서식	70
[서식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71
[참고자료 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72
[서식 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73
[서식 5] 작업장 순회 점검 일지 서식 <(2일 1회 이상) 작성>	74
[서식 6]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77
[서식 7] 위험요인별 재해감소 대책 (예시)	78
[참고자료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매뉴얼 작성	79
[참고자료 ②-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81
[참고자료 ③] 재해유형별 유해·위험요인 분류	82
[참고자료 ④] 작업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83
[서식 8]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 절차서	84
[서식 9] 안전작업 허가서	85
[참고자료 ⑤] (재해예방 기법) 작업허가제 (PTW, Permit to Work)	86
[서식 10]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내선#1, 전기 일반배관 작업)	87
[서식 11]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내선#2, CABLE TRAY 설치작업)	88
[서식 12]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외선#1, 가선공사)	89
[서식 13]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외선#2, 지중케이블 포설 및 접속)	90
[참고자료 ⑥]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개요	91

목차

[참고자료 ⑦]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방법 소개 및 주요 특징	92
[참고자료 ⑧]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세부 작성 절차(3단계 판단법)	93
[서식 1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역서 및 예산 집행 관리대장	94
[참고자료 ⑨]	예산 편성 원칙 수립	97
[참고자료 ⑩]	안전보건관련 예산항목 주요내용	99
[서식 1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이상 ~ 50억 미만)	100
[서식 1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미만)	101
[서식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대장	102
[서식 18]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103
[서식 19]	선임계 작성 (관리감독자, 모든 사업장)	104
[서식 20]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이면서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105
[서식 2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	106
[서식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표	107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108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공유	109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110
[서식 24]	선임계 작성 서식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 이상)	111
[서식 25]	선임계 작성 서식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12
[서식 26]	선임계 작성 서식(산업보건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13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 보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인)	114
[서식 28]	안전일지 작성 (안전관리자 선임 시)	115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116
[참고자료 ⑬]	발주기관별 배치인력 현황	119
[참고자료 ⑭]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120
[참고자료 ⑮]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121
[서식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122
[서식 31]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124
[서식 32]	노사협의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126
[서식 33]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서식	128
[서식 34]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결과 관리대장 및 종사자 의견청취 이행 결과 보고서 서식	129
[참고자료 ⑯]	산업안전보건법 상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	131
[서식 35]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추락사고 경우 예시)	132
[서식 36]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전기감전사고 경우 예시)	133
[서식 3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작성	134
[참고자료 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144
[서식 38]	수급인 선정 기준표 작성 및 서식	164
[서식 39]	도급, 용역, 위탁업체 계약내역 관리대장 서식	165
[서식 40]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서식	166
[서식 41]	안전보건협의회 개최결과 관리대장	167
[서식 42]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 및 결과 조치사항 관리대장 서식	168
[서식 43]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표 서식	170
[참고자료 ⑱]	수급인 선정 기준·절차 마련	171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173
[서식 44]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서식	174
[서식 45]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및 계획 점검표 서식	176
[참고자료 ⑨]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178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179
[서식 46] 개선·시정 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 서식	180
4.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참고자료	181
[서식 4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182
[서식 48] 안전보건 교육 계획서 작성 서식	183
[서식 49] 안전보건 교육 실시보고서 서식	184
[서식 50]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및 실시여부 점검표	188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190
[서식 51]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	191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서식 및 참고자료	192
[서식 52]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 목록표	193
참고자료	19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정의

적용범위

시행일

의무 및
조치사항

처벌내용 및
처벌요건

주요내용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인정되는 산업재해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사망] 1명 이상 발생
-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 제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2022.1.27.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2024.1.27. 시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④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마련

⑥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⑧ 긴급상황 발생 (중대산업재해) 대비 메뉴얼 마련

⑨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서면 작성 및 5년간 보관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내용

구 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 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처벌 요건

① 의무 위반

② 의무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③ 의무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세부사항 요약

구분

세부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적용대상 : ① 또는 ②의 조건 충족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위험요인의 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마련
 -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부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법 제4조 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	모든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

-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 (관계수급인은 100억 이상)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인 공사 (단,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단,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의무 면제)

-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제3자 업무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법 제4조 제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법 제4조 제3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한 조치

-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법 제4조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의거, 의무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의무 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의무 미이행 시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 조치

법 제5조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시행령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서면 작성 및 5년간 보관(시행한 날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의거, 전자문서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3. 적용범위·시기 및 양벌규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5.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6.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7.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9.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재해처벌법」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주요내용

1 법의 목적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1)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용어 의미

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

⇒ 치료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고, 재활기간 등은 미포함

②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을 말하며, 발생원인이 동일할 경우 발병 시기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

⇒ 직업성 질병에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 포함

- 발생시점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최초 진단일)이며, 1년 판단의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 직업성 질병자가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2)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용어 의미

① 사업 또는 사업장

-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그 자체를 의미
- (예시) 본사와 생산공장 /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등

②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상시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직,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
- 외국인 근로자 :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자라더라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

③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

-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영제7조의 2)

$$\text{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22.09.15., 산정기간(08.15~0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700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29.1) = 700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을 의미하므로, 그직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안전보건 총괄 전담부서 설치 의무 발생 (중대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판단)
- 예를 들어 00전기가 운영하고 있는 3개 현장의 월별 상시근로자수가 아래의 그림과 같을 경우, 8월과 9월에 상시근로자수가 500인을 초과하므로 8월 내에 안전보건 총괄 전담부서 설치 의무 발생



- 현실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의 예측과 안전보건 전담부서의 일시적인 설치/해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의 월별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초과가 예상되면 전담부서 설치 권장

3)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 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

4)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등'

-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상법상 대표이사 : 원칙적으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적용 유형

- ①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2명 모두 경영책임자등에 해당 가능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공동으로 부여

- ②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경우

- 각 기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 가능할 경우 각자 사업을 대표하는 자가 해당 가능

- ③ 복수의 사업 부문별 대표 외 법인을 대표하면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있는 경우

- 각 사업 부문 대표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여러 사업 부문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실질적 권한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대표 또한 경영책임자에 해당 가능

3 적용범위·시기 및 양벌규정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 (개인사업주를 포함)에게 적용 됨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함
- 다만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4.1.27.부터 법 적용

구분	적용시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2022.1.27.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2024.1.27. 시행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규정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기관 또는 법인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구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기관 또는 법인
사 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대응전략	구체적 대응 방안
실행전략	[일반사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조직규모에 따라 안전경영방침과 안전목표 및 안전추진계획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안전경영방침] → 필수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관한 의지를 제시 •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안전목표] → 필수 • 재해현황, 위험성 평가결과, 성과측정, 경영자 검토를 반영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① 안전경영방침과의 연계성, ②구체성, ③측정가능성, ④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 안전목표는 가급적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야 함 [안전추진계획] → 선택 • 안전경영방침과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방법, 일정, 소요자원을 표시 • 추진계획을 이행할 책임자와 추진결과를 측정할 지표를 설정해야 함
	실행방법 • 매년 초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추진계획을 본사, 작업현장,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게시할 것 •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추진계획 적합성과 실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요구되는 문서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게시 사진(또는 사내 홈페이지 공지 사진) • 정기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이행 확인 보고서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 ② 적용대상 : ① 또는 ②의 조건 충족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②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 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

*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선임대상 사업장

구분	선임대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5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 원 이상) 건설현장 → 1인 이상 선임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 800억 원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인 이상 선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산업보건의 (산안법 제22조)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건설업 해당사항 없음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위험성평가 개요

구분	내용
정의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절차와 유형	• 위험성평가 절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③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여부의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위험성평가 유형: 최초평가/정기평가(매년)/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발생시 등)/상시평가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항목	기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출장비 전액(겸직 안전관리자는 인건비의 50%)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 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보호구 등	- 안전모,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안전보건진단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검사비, 작업환경 측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교육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그 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지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항목	기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각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혈압계, 체온계, 건강진단 비용 등) •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에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비	•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유해·위험요인 관련 협의체 운영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동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의미

☞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 (반기 1회 이상)

대응전략	구체적 대응방안
실행전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수행 및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실행방법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 명문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독립성 부여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 충실성을 평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
요구되는 문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예산 권한 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평가 조치 결과서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보장(최소 연간 702시간)

대응전략	구체적 대응방안
실행전략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기준 마련 - 사업장의 특성(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추가 배치계획 수립 - 전문인력에 대해서 산안법의 선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 안전관리자등의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와 겸직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 보장
실행방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력, 자격보유, 역량을 고려한 사업장 배치기준 수립과 해당자 명단 관리 - 사업장 특성과 법령에 맞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현황 정리 및 변동 시 신속한 수정·보완 - 안전관리자등의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와 겸직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충분한 업무시간(최소 연간 702시간)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것
요구되는 문서	-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 안전관리자 등 선임 등 보고서 -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일지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설치 대상공사와 구성원 및 역할

*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도급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봄

구분	대상공사	개최	구성원	역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120억 원 이상 공사	분기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와 동일
도급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도급사업	월1회	- 도급인 - 수급인 전원	- 작업 시작시간 - 작업/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 작업공정의 조정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 공사	2개월	* 근로자위원 - 전체 근로자 대표 - 근로자 지명 명예산업감독관 - 관계수급인(20억 이상) 각 근로자 대표 *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관계수급인(20억 이상) 각 대표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 조사·대책 수립 - 기계·기구설비 안전보건조치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매뉴얼 수립

※ 매뉴얼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점검 (반기 1회 이상)

* 비상상황 조치계획 수립 및 대응훈련 업무 흐름 예시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③ 건설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 (반기 1회 이상)

*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의 종류 및 내용

구분	업무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가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 포함 -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구분	업무내용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항목별로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수급인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 -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정해서는 안 되며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 -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기후상황) + 작업일수(순작업) + 정리기간 -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착공준비 기간 -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중복일수 - 작업일수: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 사례, 표준품셈 활용하여 산출 - 정리기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을 참고할 수 있음

5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함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함

6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7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 (반기 1회 이상)
- ②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 집행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②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 (반기 1회 이상) 또는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②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1-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단, 산업법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함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단, 산업법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함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산업법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함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이수)		4시간 이상 (이수증 확인)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5)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 가능 장소 확인

- 교육신청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플랫폼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s://edu.kosha.or.kr/main.do>

교육 가능 장소 확인



① 사이트 접속 및 교육 신청 클릭



② 각 항목을 클릭하여 교육 과정 검색



③ 검색 후 교육 제목을 클릭 (우측의 교육 신청 X)



④ 교육장 장소 확인

8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 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9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전자문서 포함)

II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체계도

1. 안전·보건 확보의무(요약)
2.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체계도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Q&A

II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체계도

1 안전·보건 확보의무(요약)

이행 및 조치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 적용대상 : ① 또는 ②의 조건 충족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 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
-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②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위험요인의 개선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마련
 -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부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모든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②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인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②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②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점검**
- ② 제3자 업무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한 조치

- ②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의거, 의무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②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의무 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② 의무 미이행 시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 조치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 ②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②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서면 작성 및 5년간 보관(시행한 날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의거, 전자문서 포함)

2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체계도

① 지배·관리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파악	본사·지역 사업장 파악, 사업장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결정
② 조직·인력 등 확보	- 시행령 제4조 - 제2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제5호)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지정 -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③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 시행령 제4조 -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제4호)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 제5호)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권한 및 예산 편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 제7호)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제8호)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 매뉴얼 마련 -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 마련
④ 이행	- 시행령 제4조 -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이행 - 제3호) 유해·위험요인 점검(위험성 평가) - 제4호) 안전·보건 관련 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집행 - 제5호)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 제7호) 종사자 의견 수렴 - 제8호)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에 따라 조치 -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절차에 따른 이행 - 시행령 제5조 -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제3호)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⑤ 반기 1회 이상 점검	- 시행령 제4조 -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 제5호)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수준 평가 - 제7호) 종사자 의견 수렴,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제8호)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 시행령 제5조 -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제3호)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Q&A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위반과 산업재해의 발생 및 그에 따른 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2.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때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어 의미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

-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영제7조의 2)

$$\text{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4.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 '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 ☞ 그러나, '24.1.27.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용어 의미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

-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영제7조의 2)

$$\text{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5.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세요.
 - ☞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
 - ☞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언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
 - ☞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
 -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위험성 평가)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세요.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기업은 본 지침서의 제4장(Ⅳ.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필수 이행 사항 요약 안내) 목차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신속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6.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달해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 ☞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1.29.부터 참여 가능, 링크: <https://www.kosha.or.kr/survey>)
- ☞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해드립니다.

7. 소규모 영세 업체(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거나 토목건축공사사업에 대해 시공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9. 소규모 영세 업체 (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 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안전보건교육규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 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 교육은 없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2.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요?

- ☞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시공사 업체이므로, 그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공 관리를 하는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시공사와의 공사 일정 등을 협의하는 발주자의 업무 대행자 등은 건설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5.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 ☞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 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6.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빠짐없이 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7.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만, 건설 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

· **시행령 제4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8.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 ⑤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 ⑤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 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및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매뉴얼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 🔍 사업장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진단결과 체크(V)
- 🔍 자율진단 후 체크포인트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이행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란, ‘단순 확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의무사항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까지 이행’하는 것임

체크리스트 활용 예시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안전보건 목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②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③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 체크포인트

- ▶ 체크리스트 상 ‘미이행’ 또는 ‘이행 중이지만 미흡한’ 부분은 관련 서식에 따라 이행·보완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및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안전보건 목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p.69 참조		
	②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p.69 참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p.69 참조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p.69 참조		
	③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2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게시 대장 및 제·개정 관리 서식 p.70 참조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2호
(1) 적용대상 : ① 또는 ②의 조건 충족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②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나) 적용대상 :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 경우) 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조직 구성·운영 적용 제외 대상 (해당없음 V) -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3명 미만 - 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외 건설사업장 * 미이행 시, 서식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p.71 참조 참고자료 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72 참조			
②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미이행 시, 서식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p.71 참조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p.110 참조 서식 24 선임계 작성 서식(안전관리자) p.111 참조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 보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p.114 참조 서식 28 안전일지 작성 (안전관리자 선임 시) p.115 참조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p.116 참조 참고자료 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72 참조 참고자료 ③ 발주기관별 배치인력 현황 p.119 참조			
③ (보건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 미이행 시, 서식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p.71 참조 서식 25 선임계 작성 서식(보건관리자) p.112 참조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 보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p.114 참조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p.116 참조 참고자료 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72 참조			
④ (산업보건의 선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산업보건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단,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의무 면제 * 미이행 시, 서식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p.71 참조 서식 26 선임계 작성 서식(산업보건의) p.113 참조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p.116 참조 참고자료 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72 참조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미 해당 시, p.3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참조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② 해당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갈음 가능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순회점검을 수행한다. * 미이행 시, 서식 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p.73 참조 서식 5 작업장 순회 점검 일지 서식 <(2일 1회 이상) 작성> p.74 참조 참고자료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매뉴얼 작성 p.79 참조 참고자료 ③ 재해유형별 유해·위험요인 분류 p.82 참조		
②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 미이행 시, 서식 6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p.77 참조 서식 7 위험요인별 재해감소 대책 (예시) p.78 참조 참고자료 ④ 작업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p.83 참고		
③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8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 절차서 p.84 참조		
④ 핵심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작업허가제(Permit to Work)를 운영한다. * 작업허가제는 고위험작업의 경우, 작업자(협력업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부서의 검토·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 * 미이행 시, 서식 9 안전작업 허가서 p.85 참조 참고자료 ⑤ (재해예방 기법) 작업허가제 (PTW, Permit to Work) p.86 참조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대체 가능 * 미이행 시, 서식 10~13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예시) p.87~90 참조 참고자료 ②-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p.81 참조 참고자료 ⑥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개요 p.91 참조 참고자료 ⑦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방법 소개 및 주요 특징 p.92 참조 참고자료 ⑧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세부 작성 절차 (3단계 판단법) p.93 참조		
⑥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①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 미이행 시, 서식 1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역서 및 예산 집행 관리대장 p.94 참조 참고자료 ⑨ 예산 편성 원칙 수립 p.97 참조 참고자료 ⑩ 안전보건관련 예산항목 주요내용 p.99 참조		
②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 미이행 시, 서식 1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역서 및 예산 집행 관리대장 p.94 참조 참고자료 ⑨ 예산 편성 원칙 수립 p.97 참조 참고자료 ⑩ 안전보건관련 예산항목 주요내용 p.99 참조		
③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나) 적용대상 : 자율 체크리스트에 따름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및 예산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1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이상 ~ 50억 미만) p.100 참조 서식 1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미만) p.101 참조 서식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대장 p.102 참조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08 참조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공유 p.109 참조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공사금액 20억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미이행 시, 서식 1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이상 ~ 50억 미만) p.100 참조 서식 1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미만) p.101 참조 서식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대장 p.102 참조 서식 18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p.103 참조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08 참조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공유 p.109 참조		
③ (관리감독자 선임) 모든 사업장에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미이행 시, 서식 1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이상 ~ 50억 미만) p.100 참조 서식 1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미만) p.101 참조 서식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대장 p.102 참조 서식 19 선임계 작성(관리감독자) p.104 참조 서식 2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 p.106 참조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08 참조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공유 p.109 참조		
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공사금액 20억 이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인 사업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미이행 시, 서식 1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이상 ~ 50억 미만) p.100 참조 서식 1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미만) p.101 참조 서식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대장 p.102 참조 서식 20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p.105 참조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08 참조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공유 p.109 참조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 *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평가 실시 * 미이행 시, 서식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표 p.107 참조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08 참조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공유 p.109 참조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6호
①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가.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나) 적용대상 : 자율 체크리스트에 따름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미이행 시,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p.110 참조 서식 24 선임계 작성 서식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 이상) p.111 참조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 보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p.114 참조 서식 28 안전일지 작성 (안전관리자 선임 시) p.115 참조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p.116 참조 참고자료 ⑬ 발주기관별 배치인력 현황 p.119 참조 참고자료 ⑭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20 참조 참고자료 ⑮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p.121 참조																	
② (보건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 미이행 시,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p.110 참조 서식 25 선임계 작성 서식(보건관리자) p.112 참조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p.116 참조 참고자료 ⑭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20 참조 참고자료 ⑮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p.121 참조																	
③ (산업보건의 선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산업보건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단,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의무 면제 * 미이행 시,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p.110 참조 서식 26 선임계 작성 서식 (산업보건의) p.113 참조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p.116 참조 참고자료 ⑭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p.120 참조 참고자료 ⑮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p.121 참조																	
④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특히,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최소 연702시간 이상) <table border="1"> <tr> <th colspan="3">안전·보건 관리 전문인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시간(고시내용 요약)</th></tr> <tr> <td>기본시간</td><td>+</td><td>위험도에 따른 추가 시간</td></tr> <tr> <td>585시간</td><td>+</td><td>117시간</td></tr> <tr> <td colspan="2"></td><td>= 기본시간</td></tr> <tr> <td colspan="2"></td><td>702시간</td></tr> </table>	안전·보건 관리 전문인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시간(고시내용 요약)			기본시간	+	위험도에 따른 추가 시간	585시간	+	117시간			= 기본시간			702시간		
안전·보건 관리 전문인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시간(고시내용 요약)																	
기본시간	+	위험도에 따른 추가 시간															
585시간	+	117시간															
		= 기본시간															
		702시간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건설업에 해당 사항 없음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같음

※ 종사자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 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 절차(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등 적용 제외 대상 → 별도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업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미대상 – 도급 사업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협의체 미대상 * 미이행 시, 참고자료 ⑥ 산업안전보건법 상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 p.131 참조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건설업 - 120억원 이상 * 미이행 시, 서식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p.122 참조		
③ 도급인·수급인 협의체, 건설공사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 120억원 이상 * 미이행 시, 서식 3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p.124 참조 서식 32 노사협의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p.126 참조		
④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 (토의, 안전순찰, 안전미팅(TBM), 회의,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Tool Box Meeting) ▶ (개 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 유도. 주로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논의 – 기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강조 – 안전 미팅 후, 안전보건의 확보되는 경우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미이행 시, 서식 33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서식 p.128 참조		
⑤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34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결과 관리대장 및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 결과 보고서 서식 p.129 참조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35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추락사고 경우 예시) p.132 참조 서식 36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전기감전사고 경우 예시) p.133 참조 서식 3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작성 p.134 참조 참고자료 ⑦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p.144 참조		
②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35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추락사고 경우 예시) p.132 참조 서식 36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전기감전사고 경우 예시) p.133 참조 서식 3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작성 p.134 참조 참고자료 ⑦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p.144 참조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나) 적용대상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사업 및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38 수급인 선정 기준표 작성 및 서식 p.164 참조 서식 39 도급, 용역, 위탁업체 계약내역 관리대장 서식 p.165 참조 서식 40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서식 p.166 참조 서식 41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 관리대장 p.167 참조 서식 42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 및 결과 조치사항 관리대장 서식 p.168 참조 서식 43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 서식 p.170 참조 참고자료 ⑧ 수급인 선정 기준·절차 마련 p.171 참조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③ 건설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④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3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 서식 p.170 참조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가)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호
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4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서식 p.174 참조 참고자료 ⑨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p.178 참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5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및 계획 점검표 서식 p.176 참조 참고자료 ⑨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p.178 참조		
③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4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서식 p.174 참조 서식 45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및 계획 점검표 서식 p.176 참조 참고자료 ⑨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p.178 참조		
④ 재발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4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서식 p.174 참조 서식 45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및 계획 점검표 서식 p.176 참조 참고자료 ⑨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p.178 참조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가)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적용대상 :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명령 등을 받은 사업 및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6 개선·시정 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 서식 p.180 참조			
②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6 개선·시정 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 서식 p.180 참조			

4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제1호·제2호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
②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미이행 시, 서식 4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p.182 참조		
②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인정) * 미이행 시, 서식 4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p.182 참조		
③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p.182 참조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제3호·제4호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②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이수시간				
과 정	대상자	시 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 외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함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함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함	*16시간 이상 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16시간에 대해서는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의미: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이수)	4시간 이상 (이수증 확인)		
* 미이행 시, 서식 48 안전보건 교육 계획서 작성 서식 p.183 참조 서식 49 안전보건 교육 실시보고서 서식 p.184 참조				
②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점검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50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및 실시여부 점검표 p.188 참조				
③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미이행 시, 서식 4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p.182 참조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수행
②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나) 적용대상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사업 및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했다. (수급인 또는 각 단계의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조치 점검 이행 여부) * 미이행 시, 서식 51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 p.191 참조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가) 관련규정

시행령 제13조 (조치 등에 관한 서면 보관의무 조치)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조치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 전자문서 포함

나)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자율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조치사항’ 관련 문서를 서면으로 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중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① 각종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 ② 모든 문서는 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 - 반기별 이행·조치사항 관련 서류 관리대장 작성 (필요 시) * 미이행 시, 서식 52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 목록표 p.193 참조		

IV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필수 이행 사항 요약 안내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시행령 제4조 제2호)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시행령 제4조 제6호)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8.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 (시행령 제4조 제8호)
9. 도급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10.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2호)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사항 등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
1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책임자등(통상 대표이사) 및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가중**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충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개별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중심의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넘어서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관리체계를 통해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목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필수적인 이행 사항과 세부 행동 요령”을 안내하오니, 목차 ‘Ⅲ. 자율 체크리스트’로 제시된 내용을 단기간에 모두 이행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최소한 아래 필수 진단 사항과 관련 행동 예시를 참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②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③ 위 목표와 방침을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설정할 것.

※ (서식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서식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참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4.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목 표
○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 -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및 작업장 조성을 위한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 - 안전한 현장 구축 및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법규 및 규정 준수 ○ 선제적 안전보건관리 실시 및 안전보건 활동 강화 -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 - 전 임직원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실효성 높은 교육 실시

[STEP 2] 위 경영방침과 목표를 작업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파할 것.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인쇄하여 종사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작업 현장 내에 부착 또는 게시해 놓을 것.
- TBM시 또는 안전교육 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전파할 것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시행령 제4조 제2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에 체크할 것 (전담조직 구성·운영 적용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이 3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미만이고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를 넘어가는 건설 사업주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것

■ 확인 사항

선임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 안전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이 총 3명 이상이고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또는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주인지 확인

⇒ **해당 없으면 STEP 1단계에서 종료**

[STEP 2] (적용 대상인 경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

■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TIP

- 부서 인원을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만을 담당하게 함

[STEP 3]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안전보건 전담 조직 운영 TIP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포함된 전사 조직도, 업무 분장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총괄·관리) 작성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위 업무 분장에 따라 이행한 업무 활동 서류 보관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위험성 평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②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 및 관련 개선조치가 이루어 지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③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서를 마련할 것

▣ 위험성 평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되,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감소대책 이행·확인 → 평가결과 공유·교육

[참고자료 ②-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예시 참조

[STEP 2]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

▣ 위험성 수준을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

※ 4가지 방법(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중 기업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사업장에서 간명하게 실시할 수 있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서식 예시는

[서식10]~[서식13]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참조

▣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할 것

※ 최초평가(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정기평가(매년) /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발생시 등)

▣ 위험성 평가결과는 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할 것

※ 일일 작업 전 회의, 조회, 안전교육 시 위험성 평가결과와 종사자 준수 사항을 공유

※ 작업 현장 내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 등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 (서식례)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illegible]

■ 평가대상 : 전기 일반배관 작업			■ 실시일자 :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자재(배관) 운반 시 요통	☐ ☒ ☐ 상 중 하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2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 중 사고	☐ ☒ ☐ 상 중 하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3		☐ ☐ ☐ 상 중 하					
4	...	☐ ☐ ☐ 상 중 하					

[STEP 3]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 및 관련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것.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 주기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
- 반기 1회 이상 전 공사 현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 중에서 “상” 위험 군에 속하는 유해·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합하여 대표이사(대표자)에게 보고할 것.
 - ※ 대표이사(대표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 대표이사(대표자)는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②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것

▣ 차기 사업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안전보건 관련 항목을 별도로 구성할 것

※ 안전보건 예산 편성한 양식례 [\(\[서식 14\]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역서 참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계(단위: 백만원)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안전보건조직/인력 노무관리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질환 예방		
	• 휴게·위생시설 관리		
예비	• 예비비		

[STEP 2] 안전보건 예산이 위 편성안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 정기적으로(최소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편성 예산의 집행률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필요 부분을 재확인하여 집행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할 것.

※ (서식례) 안전보건 예산 점검표 [\(\[서식 14\] 안전·보건 예산집행 점검표 참조\)](#)

(점검일자: 2024. . .)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율(%)	개선조치
계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안전보건조직/인력 노무관리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있다. ※ 적용 제외 대상 (‘해당 없음’에 체크)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업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대상 - 도급 사업이 없는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미대상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③ 위 ②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선임계를 작성할 것 **([서식 18]~[서식 20] 선임계 작성 참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 기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예: 현장 소장)
 -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예: 작업 반장)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공사 현장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예: 현장 소장)

[STEP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업무 권한과 예산을 부여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담당 업무’와 ‘예산’에 관한 권한 분장 문서를 구비할 것

※ (서식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및 예산에 관한 권한 분장표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산재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규칙상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관리 작업과 관계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그 사용의 교육 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 정돈, 통로 확보 감독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파악·개선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의 작업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 • 대상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예산 권한	[예산 권한 관련 TIP] • 예산에 관한 권한 규정/편성안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예 :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예 : 작업반장 등)에게 위 업무에 관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둘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자로서 통상 예산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권한 부여하는 것이 현실상 어렵다면 최소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STEP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것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기준이 제시된 평가표를 만들 것
- ▣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토록 할 것
 - ※ 평가자는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 사업주, 현장 소장(관리감독자 평가에 한함) 등이 될 수 있음

※ (서식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평가표 **([서식 22] 안전보건관리책임 등 평가표 참조)**

사업장명 :

평가일자 : 년 월 일

직 책	성 명	담당업무	평가기준			비고
			미흡	보통	양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1.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당해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사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집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안법 제62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집행에 관한 사항				

※ 평가기준 (반기 1회 이상 평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 달성 및 재해예방 기여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기재하고 당사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평가자(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

(서명)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시행령 제4조 제6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② 배치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각 작업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제22조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점검하고, 미달하는 현장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배치할 것 ([서식 24]~[서식 26] 선임계 작성,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보고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구분	선임대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5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 원 이상) 건설현장 → 1인 이상 선임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 800억 원 이상(토목공사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건설현장 → 1인 이상 선임

[STEP 2]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조치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최소 업무시간	기준
최소 연간 702시간 이상	• 건설업(건축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
추가 100시간	•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
추가 200시간	•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②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③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제도)를 구축할 것

- 각 작업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각 협의체(제64조, 제75조)의 적용 대상인지 점검할 것
 - ※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행’에 체크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 도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구성
 - ☞ 노사협의체 구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협의체 별도 구성 불필요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 그 외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 도급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 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의체의 적용 제외 대상의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소리함 설치 등)를 마련해야 함

[STEP 2] 위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하고, 취합된 의견 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실시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원회 · 협의체의 적용 대상 현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 회의체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것.
 - ※ 회의록 서식은 [서식 30]~[서식 32]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참조
- 산업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의체의 적용 제외 대상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종사자 의견 관리대장’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취합하여 관리할 것.
 - ※ 관리대장 양식은 [서식 34] 관리대장 및 이행여부 점검표 참조

[STEP 3]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것

-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협의체 등 또는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 현장이 있는지 점검할 것.
- 반기 1회 이상 취합된 의견 가운데 개선 조치가 필요한 의견과 그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대표자)에게 보고할 것.
 - ※ 대표이사(대표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 ※ 대표이사(대표자)에 대한 보고용 서식은 아래 양식을 참조
- 대표이사(대표자)는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

※ (서식례) 종사자 의견 청취 보고용 양식 [\(\[서식 34\] 종사자 의견청취 이행결과 보고서 참조\)](#)

종사자 의견청취 이행 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2024. 00. 00)				
사업장명 (현장명)	의견사항	조치 결과		비고
		조치 완료	조치 중	
0000	00현장 절연복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요청	✓		

8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 (시행령 제4조 제8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②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는 반드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것.
 - 대응 매뉴얼은 △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 △ 피해자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 대응 절차는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순서로 구성할 것
 - 위험요인 제거와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끝낸 이후에 작업이 재개되도록 할 것
 - ※ 대응 매뉴얼은 [서식37] 2. 대응 매뉴얼 작성, 3. 비상연락망 작성 참조

[STEP 2] 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을 인쇄하여 작업 현장 내에 게시해 둘 것

[STEP 3] 반기 1회 이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점검할 것

- 점검 방식으로 ‘시나리오 훈련’
 - ※ (시나리오 훈련 방식 예시) 반기별로 각 현장마다 주요 비상 사태에 관한 테마를 정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
 - ※ 훈련 보고서 서식은 [서식35] 9. 비상훈련 결과보고서 참조
- 반기 1회 이상 시나리오 훈련결과, 기타 매뉴얼 상의 조치 내용을 정리하여 **대표이사(대표자)에게 보고할 것.**
 - ※ 대표이사(대표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 대표이사(대표자)는 반기 1회 이상 위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

9 도급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③ (건설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④ 반기 1회 이상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수급업체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자를 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안전·보건’에 관한 항목도 마련할 것
- ※ 안전보건 평가 항목은 아래 ‘수급업체 등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서식을 참고하거나
[서식 38] 수급인 선정 기준표 작성 및 서식 참조

※ (서식례) 수급업체 등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리더십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의 적정성	10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20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20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20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20	
산업재해 발생 이력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 발생 여부	10	
총 점		100	

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자	이 름	(서명)
	적격[] 부적격[]			

[STEP 2] 수급업체 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을 받은 수급업체가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구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이를 갹출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책정하여야 함.
- 수급업체 종사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작업 단계별(준비기간/비작업일수/주요 작업별 작업일수/정리기간 등)로 나누어 적정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업체 등과 위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공사 기간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의 내용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STEP 3] 반기 1회 이상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업체 등이 선정되는지 점검할 것

- 반기 1회 이상 위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기준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대표자)에게 보고할 것.
 - ※ 대표이사(대표자)는 협력업체 선정 등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 대표이사(대표자)는 반기 1회 이상 위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

10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2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②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반드시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작업과 관계된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재발 방지 대책에 관련 서련 서식은 [서식45] 1.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작성 참조
-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지 점검할 것.
-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관련 작업 종사자 모두에게 TBM, 안전교육시에 공유·전파할 것.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사항 등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령한 경우 신속히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중앙행정기관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 · 지시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신속히 대표이사 (대표자)에게 보고할 것

- 보고 사항에는 시정 · 명령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함

[STEP 2] 기간 안에 개선 · 시정 명령 사항을 이행할 것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 시정 명령 사항과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한 사항 등을 관리할 것
※ 개선 · 시정 명령 사항에 관한 관리 내역 서식은 [서식 46] 참조
-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개선 · 시정 대상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점검할 것.
- 개선 · 시정 명령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작업 종사자 모두에게 TBM, 안전교육시 공유·전파할 것.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STEP 1]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사항을 파악할 것**

-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하고, 해당 관계법령의 법적 의무 항목을 리스트업 하여 관리할 것.
※ 특히, 안전보건 관련 대표적인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음

[STEP 2]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할 것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점검표를 만들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점검표 양식은 [서식 47] 참조**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대표자)에게 보고할 것.
※ 대표이사(대표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 대표이사(대표자)는 반기 1회 이상 위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

1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

1) <필수> 진단 사항

진 단 사 항	진단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2) <예시> 실천 사항

[STEP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파악할 것

- ▣ 위 12번에서 리스트업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목록’을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사항을 리스트업하여 관리할 것
 - ※ 특히, 안전보건 관련 대표적인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정기/신규/작업 변경시/특별 교육 등)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음

[STEP 2]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할 것

- ▣ 안전보건 관계 교육 계획서를 만들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조치할 것
 - ※ **연간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서 서식은 [서식 48] 참조**
-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대표자)에게 보고할 것.
 - ※ 대표이사(대표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확인/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 ▣ 대표이사(대표자)는 반기 1회 이상 위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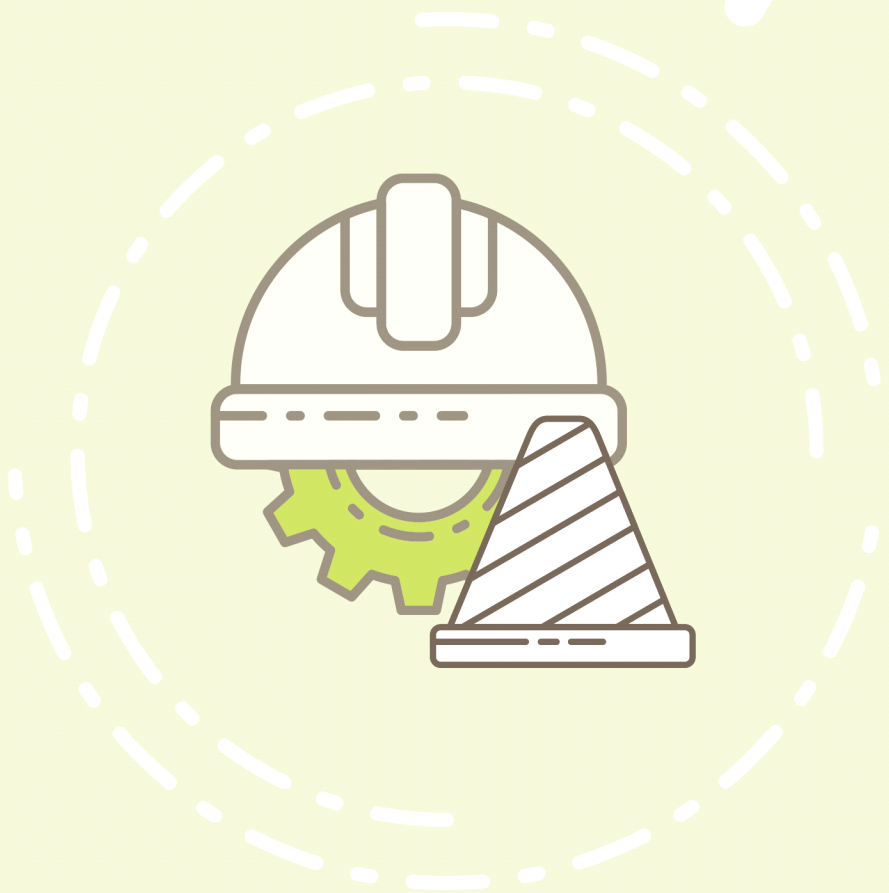
V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서식 및 참고자료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총괄표

구분		참고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서식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예시) [서식 2]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게시 대장 및 제·개정 관리 서식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서식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서식 24] 선임계 작성 서식(안전관리자) [서식 25] 선임계 작성 서식(보건관리자) [서식 26] 선임계 작성 서식(산업보건의)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 보고(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서식 28] 안전일지 작성 (안전관리자 선임 시)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참고자료 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참고자료 ⑬ 발주기관별 배치인력 현황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서식 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서식 5]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서식(2일 1회이상) 작성 [서식 6]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서식 7] 위험요인별 재해감소 대책 (예시) [서식 8]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 절차서 [서식 9] 안전작업 허가서 [서식 10~13]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참고자료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매뉴얼 작성 참고자료 ②-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참고자료 ③ 재해유형별 유해·위험요인 분류 참고자료 ④ 작업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참고자료 ⑤ (재해예방 기법) 작업허가제 (PTW, Permit to Work) 참고자료 ⑥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개요 참고자료 ⑦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방법 소개 및 주요 특징 참고자료 ⑧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세부 작성 절차 (3단계 판단법)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서식 1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역서 및 예산 집행 관리대장 참고자료 ⑨ 예산 편성 원칙 수립 참고자료 ⑩ 안전보건관련 예산항목 주요내용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서식 1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이상 ~ 50억 미만) [서식 1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미만) [서식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대장 [서식 18]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서식 19] 선임계 작성(관리감독자, 모든 사업장) [서식 20]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이면서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서식 2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 [서식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표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공유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서식 24] 선임계 작성 서식(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 이상) [서식 25] 선임계 작성 서식(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서식 26] 선임계 작성 서식(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 보고(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서식 28] 안전일지 작성 (안전관리자 선임 시)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참고자료 ⑬ 발주기관별 배치인력 현황 참고자료 ⑭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참고자료 ⑮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구분		참고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서식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서식 3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서식 32] 노사협의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서식 33]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서식 [서식 34]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결과 관리대장 및 종사자 의견청취 이행 결과 보고서 서식 참고자료 ⑯ 산업안전보건법 상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서식 35]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추락사고 경우 예시) [서식 36]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전기감전사고 경우 예시) [서식 3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작성 참고자료 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9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서식 38] 수급인 선정 기준표 작성 및 서식 [서식 39] 도급, 용역, 위탁업체 계약내역 관리대장 서식 [서식 40]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서식 [서식 41]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 관리대장 [서식 42]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 및 결과 조치사항 관리대장 서식 [서식 43]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 서식 참고자료 ⑱ 수급인 선정 기준·절차 마련
10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44]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서식 [서식 45]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및 계획 점검표 서식 참고자료 ⑲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11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46] 개선·시정 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 서식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에 따른 필요조치	[서식 4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1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서식 48] 안전보건 교육 계획서 작성 서식 [서식 49] 안전보건 교육 실시보고서 서식 [서식 50]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및 실시여부 점검표
14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서식 51]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
15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서식 52]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 목록표

서식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서식 [예시]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작성

목 표

○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

-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및 작업장 조성을 위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 실시
- 안전한 현장 구축 및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법규 및 규정 준수

○ 선제적 안전보건관리 실시 및 안전보건 활동 강화

-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
- 전 임직원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실효성 높은 교육 실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해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 안전보건 목표

- 사고성 재해율 00% 감소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건수 00건 달성

* 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관리 예시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식 2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게시 대장 및 제·개정 관리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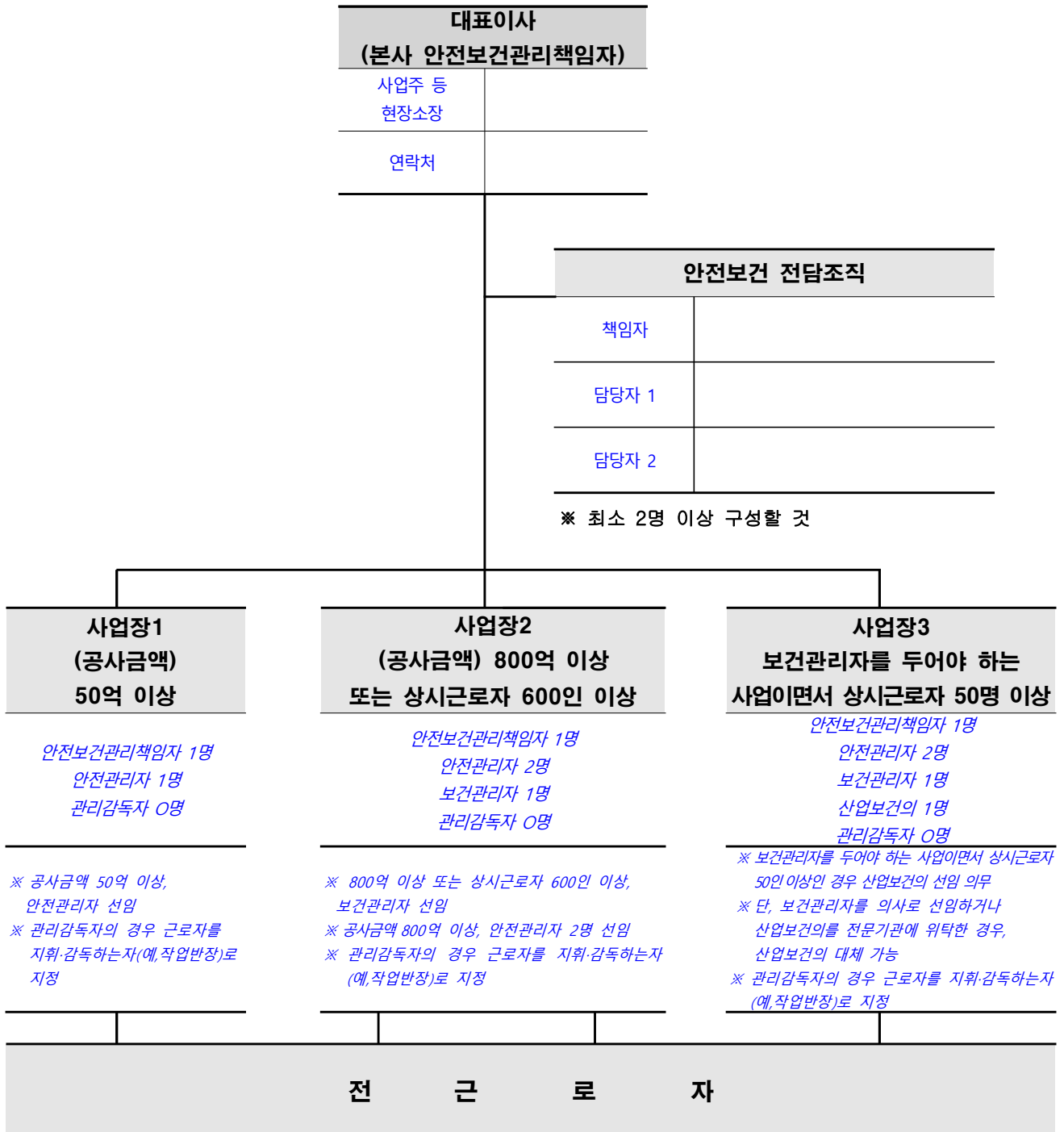
1.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게시 대장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게시대장			
구분	게시·안내일	게시·안내방법(장소 등)	게시자 (현장소장 및 사업주 등)
1	현장사무실 게시판 게시	00. 00. 00.	
2			
3			
4			
5			
6			

2.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주기적 관리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관리대장					
구분	개정일자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사유	관리자 (현장소장 및 사업주 등)
1	00. 00. 00.	안전·보건 목표	유해·위험요인 월별 1건 이상 발굴 및 개선	유해·위험요인 사전확인 및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2					
3					
4					
5					
6					

서식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 전담 조직 구성 시 인원은 최소 2명이상 구성

참고자료 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구 분	적용 사업장	선임자격	주요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제15조) *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원 ↑ - (제조) 50명 ↑ - (기타) 100명	실무경험 5년 이상	1. 산재예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4.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6.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관리감독자 (제16조)	• 모든 사업장	실무경험 1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	1. 해당 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2.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3.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4.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5.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관리자 (제17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50억원 ↑ - (제조 등) 50명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1.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 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2.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제18조) * 300명 ↑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원 ↑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 ※ 토목공사는 1,000억원 ↑ - (제조 등) 50명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1.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2.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3.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4.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제22조)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산업보건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업종별 상이 - (건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 ↑ 사업장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1.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2.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서식 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수행자 성명: _____ 점검일자 : 년 월 일	
유해 위험작업	사고, 질병의 유형
(1)	
(2)	
(3)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1. 끼임·감김 2. 추락·전도 3. 감전 4. 화재·폭발 5. 기타	■ 질병의 유형 1. 진폐 2. 중독 3. 난청 4. 요통 6. 기타
점 검 자	확인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식 5 작업장 순회 점검 일지 서식 <[2일 1회 이상] 작성>

1) 재해별 작업장 순회 점검 일지

현장순회점검일지

사업장명:		점검일자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개선요망 사항	비 고
		양호	보통	불량		
개인 보호구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감 전 재 해 예 방	○ 절연용 방호구 설치상태 (절연덮개, 절연매트, 선로호스 등)					
	○ 절연보호구 관리상태 (절연장갑, 절연소매, 절연장화 등)					
	○ 전기시설 관리상태 (감전위험부 접근금지 등)					
추 락 재 해 예 방	○ 추락방지시설 관리상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 이동식비계 관리상태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등)					
	○ 사다리디딤대 관리상태 (아웃트리거, 2인1조작업 등)					
건 설 기 계	○ 양중장비 관리상태 (안전장치, 와이어로프, 신호수 등)					
	○ 굴삭기 관리상태 (안전장치, 신호수, 접근금지 등)					
	○ 기타 건설기계 관리상태 (안전장치, 신호수, 접근금지 등)					
기 타	○ 위험물(인화성물질등) 관리상태					
	○ 위험, 주의 등 표지판 관리상태					
	○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관리상태					
■ 특기사항 (행사, 교육, 외부점검 등)						
점검결과						
점검결과(지적사항)				점검결과(조치계획)		
사진설명				사진설명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2) 공사별 작업장 순회 점검 일지

작업장 순회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 :		년	월	일
구분	순 회 안 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적정	부적정			
일반 사항	작업 전 안전한 작업계획 수립여부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관리자)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위험장소마다)					
	보호장비 착용상태 (안전모,안전벨트 등)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공사장 진입차량,인원에 대한 통제					
	작업장 내 통로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고 안전통로 확보 유무					
	전담 교통신호수 배치 및 운용 여부					
옥외 공사	정전 작업 시 검전기구로 전원 차단 확인 후 작업진행을 하였는가?					
	활선 작업 시 충전부위 방호구를 설치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활선 근접 작업 시 충전부위에 방호구를 설치하였는가?					
	근로자가 활선경보기를 착용하고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며 작업하는가?					
	야간 작업 시 작업장에 적정 조도 확보 및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근로자가 반사조끼 착용 및 안전모, 안전화에 야광 반사스티커를 부착한 후 작업하는가?					
	버킷트럭작업 버킷의 절연상태를 점검했는가?					
	버킷트럭의 정격하중은 준수하여 작업하는가?					
	철탑 승강 시 승강용 볼트의 조임상태 등을 확인하였는가?					
	지게차 또는 카고 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 시에 전담신호수를 배치하였는가?					
	승주 전 전주의 자립상태와 승·하강 시 스텝볼트의 고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이동하였는가?					
	옥내 공사	글라인더,절단기 등 위험기계기구 사용 시 방호덮개를 사용하며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전도방지장치·벽이음을 설치하고 승하강용 사다리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작업발판 이용 시 높이는 1m 미만, 길이는 2m 미만으로 설치하고 발판의 폭이 40cm인가?						
개구부 덮개에 개구부 표지가 부착이 되어 있으며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및 기구 사용 시, 적당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가설전선 사용 시, 접지극이 있는 3구형 콘센트·플러그를 사용하고 있는가?						
용접 작업 시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고 충전부의 단자 절연 방호 조치 후에 작업하는가?						

구분	순 회 안 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적정	부적정	
관로 공사	맨홀 덮개 개폐시는 반드시 전용 개폐기를 사용 및 물이 고인 경우 양수작업 실시 여부			
	맨홀 출입 전 유해가스 ·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 산소농도 18% 이상인 조건에서 작업하고, 외부에 관리감독자를 배치 유무			
	작업 전 기계장치(후크 해지장치) 안정성 여부 점검을 하였는가?			
	굴착기를 통한 작업 시 근로자 및 장비 간 동시 병행 작업을 지양하였는가?			
	굴착기 등 각종 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상태			
	굴착기 장비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상태 (경광등, 경보음, 후방카메라 등)			
	굴착작업 전 지장물의 매설 위치 및 깊이 등 확인 여부			
	접근금지용 펜스 등 설치 유무			
	도로 인접 작업 시 안전펜스, 라바콘,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유무			
	굴착작업 시 보통흙 기준 습지 1:1~1:1.5, 건지 1:0.5~1:1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였는가?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사다리, 계단 등의 설치 유무			
	작업 전 굴착면 단부 및 법면의 부석 등을 제거한 후 작업 실시 여부			
기타	배관용 자재 및 부속 자재 등 중량물의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 하여 적재 · 보관하여 사용하였는가?			
	작업 종료 시 맨홀 덮개를 확실히 덮는 등 작업구역 정리정돈 여부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부착 상태 확인			
	중량물은 전용의 운반기계 · 기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중량물 취급용 로프 상태 (찢김, 꼬임 등)			
	전기 취급 작업 시 접지회로 구성 및 누전차단기 경유 상태			
	작업환경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물이 부착, 설치된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 사용하였는가?			
	사다리 이용 고소작업 시 전도방지장치, 벌림방지장치 등 안전 시설물 사용 및 2인 1개조 작업여부			
	가설사무실, 숙소, 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은 없으며 소화기 비치 여부			

서식 6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순번	기계 · 기구 · 설비명 (관리번호)	단위작업 장소	수량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공장	5	끼임
2	프레스(P-5~8)	2공장	5	끼임
3	지게차(A-1, 2)	외부	2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1공장	3	부딪힘, 끼임
5	크레인(C-4,5,6)	2공장	3	부딪힘, 끼임

서식 7 위험요인별 재해감소 대책 [예시]

위험요인	① 제거 · 대체	② 공학적 통제	③ 행정적 통제	④ 보호구 착용
끼임 위험 기계·기구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잠금 및 표지부착(LOTO)', 작업허가제 도입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				

참고자료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매뉴얼 작성

결 재			사업주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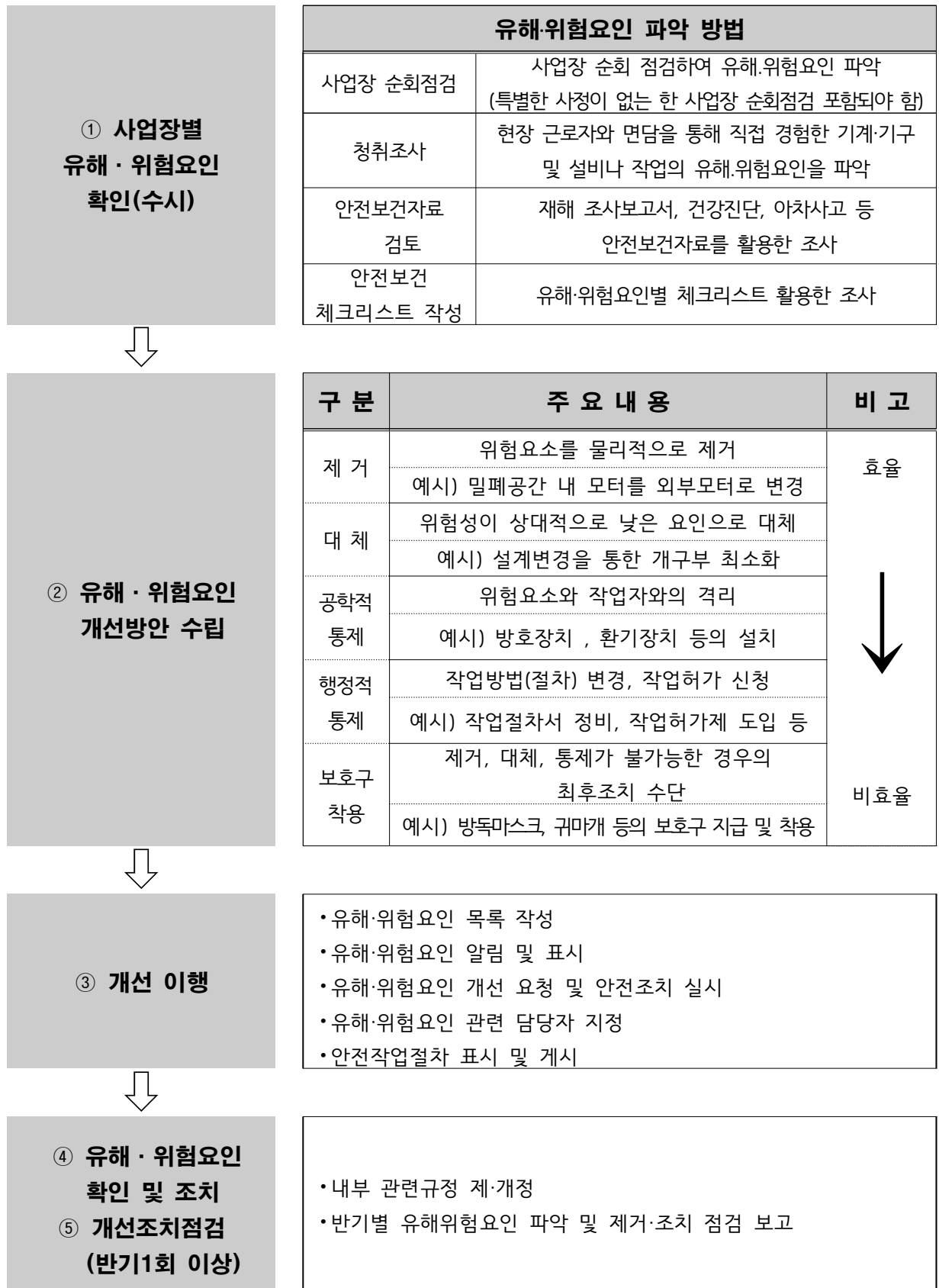
2022. 0. 0.

회사명 : 00 전기(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단, 위험성평가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절차도



참고자료 ②-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업체명			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담당자)	근로자대표 (작업반장 등)	승인자 (현장소장)								
작성일자 (개장일자)														
목적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상-중-하)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수시 위험성평가 및 매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성명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		공사담당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직위: _____	직위: _____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언,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성명	성명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평가 절차 및 방법	1. 사전준비	① 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 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① 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 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 아차사고 제보사례 ④ 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3. 위험성 결정	①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②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③ '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관리	<table border="1"> <tr> <th>위험성 수준</th> <th>판단 기준</th> <th>허용 가능 여부</th> </tr> <tr> <td>상</td> <td>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td> <td rowspan="2">허용 불가능</td> </tr> <tr> <td>중</td> <td>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td> </tr> <tr> <td>하</td> <td>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td> <td>허용 가능</td> </tr> </table>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능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능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허용 가능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 등급 대책: 공법변경 → 작업변경 →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순 ①-2. '중' 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 등급: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5.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 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② 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6. 평가 결과 공유·교육	① [TBM] 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 [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SNS 공유 병행 가능) ③ [교육]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참고자료 ③ 재해유형별 유해·위험요인 분류

번호	재해유형	내용
1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2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진 경우
3	깔림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진 경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작업 중 뒤집혀진 경우
4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 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
5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6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7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의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8	절단, 베임, 찢림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 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
9	감전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설비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누설전류(누전)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사람에게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진 경우 충전부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아크에 의한 화상 등을 포함함
10	폭발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발,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11	파열	배관, 용기 등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서 폭발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12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함
13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 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14	이상온도, 물체접촉	고·저온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를 말함
15	화학물질 누출, 접촉	화학물질의 누출사고(언지르거나 튀는 경우 포함)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등의 경우를 말함 ※ 화재나 폭발 사고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등은 「화재」또는 「폭발」로 분류
16	산소결핍	「산소결핍·질식」이라 함은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 및 이물질 등에 신체의 기도가 막힌 경우를 말함
17	빠짐, 익사	바다, 호수, 맨홀, 피트, 하수처리장, 정화조, 용기 내, 구덩이 등의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를 말함
18	사업장 내 교통사고	사업장 내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함
19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업장 외의 도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말함
20	해상항공 교통사고	선박 충돌, 항공기 추락 등 해상·항공 교통사고를 말함
21	체육행사 등의 사고	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 워크샵, 회식 등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함
22	폭력행위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마약, 정신질환 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폭행 또는 협박·언어·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말함
23	동물상해	동물에 의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함
24	기타	재해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의 해당 분류된 코드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참고자료 ④ 작업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작업 장소	안전작업	유해 및 위험요인 대처방안
공통	이동식사다리	① 1.2m미만인 경우 안전모 착용 ② 1.2m이상 2m미만인 경우 안전모 착용 및 2인1조 작업 ③ 2m이상인 경우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2인1조 작업
구내	이동식틀비계 또는 말비계 조립·해체	① 구내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을 위한 임시가설물 (이동식틀비계 또는 말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
지하	산소·가스농도 측정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주된 작업 위치를 고려하여 측정 후 진입
	맨홀 양수	① 맨홀 출입 전 맨홀 내 양수작업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① 맨홀 내 작업 시 주변에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표지판 및 라비콘 등)
	작업원 배치	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내부 작업자와 연락 유지를 위한 작업원을 맨홀 주변에 배치
	매설물 탐지	① 맨홀 또는 지하관로 공사 전에 매설물 사전 확인
가공	지선/지주 점검	① 등주 시 지선 또는 지주의 상태를 점검하여 체중 또는 작업에 의한 장력으로 전주가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확인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① 가공 작업장소의 주변에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표지판 및 라바콘 등)
	장력유지 작업자 배치	① 등주 작업자가 가공 선로의 적정 장력을 유지하며 조정할 수 있도록 장력유지 작업자 배치
	지상 안내인 배치	① 가공작업 시 공기구류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로 지상에 안내인 배치
도로	관계기관 사전협의	① 도로 또는 사유지에서 작업 시 도로관리기관, 소유주,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자) 기관과 협의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① 도로 작업장소의 앞뒤에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표지판 및 라바콘 등)
	교통정리원 배치	① 도로의 교차로나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서 작업하거나 도로상에서 케이블 드럼을 취급할 경우 통행인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리원 배치
철도	열차감시원 배치	① 철도 운행선 공사(인접공사 포함) 등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상하선 각각 열차감시원 배치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배치	① 철도보호지구에서 전차선 차단 작업을 시행할 경우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배치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① 철도관련 정보통신공사 작업장소의 앞뒤에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표지판 및 라바콘 등)

서식 8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 절차서

근로자 제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제 안 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작 업 명			
유해위험요인	※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에 따라 작성		
근로자 제안 의견		수행자의 의견	
※ 유해위험요인과 개선해야 할 점		※ 경험에 대한 조언	

서식 9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 가설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맨홀 등) ☐ 고소작업 ☐ 중량물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가설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맨홀 등)	
1. 안전작업표지판 설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산소 18~23.5%	
2.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작업용 장비, 도구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별 현장 주의사항 확인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비상대피 계획 수립여부 확인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8. 주변 정리상태(맨홀 내부등)	
				9. 작업 감시인 지정·배치 여부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기타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6. 안전모 착용 상태		6.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8.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유무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서 (협력업체 포함)	확인사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확인자 (담당부서장)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허가관리 부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가내용				
	허가자 (주관부서장)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참고자료 ⑤ [재해예방 기법] 작업허가제 (PTW, Permit to Work)

1. 정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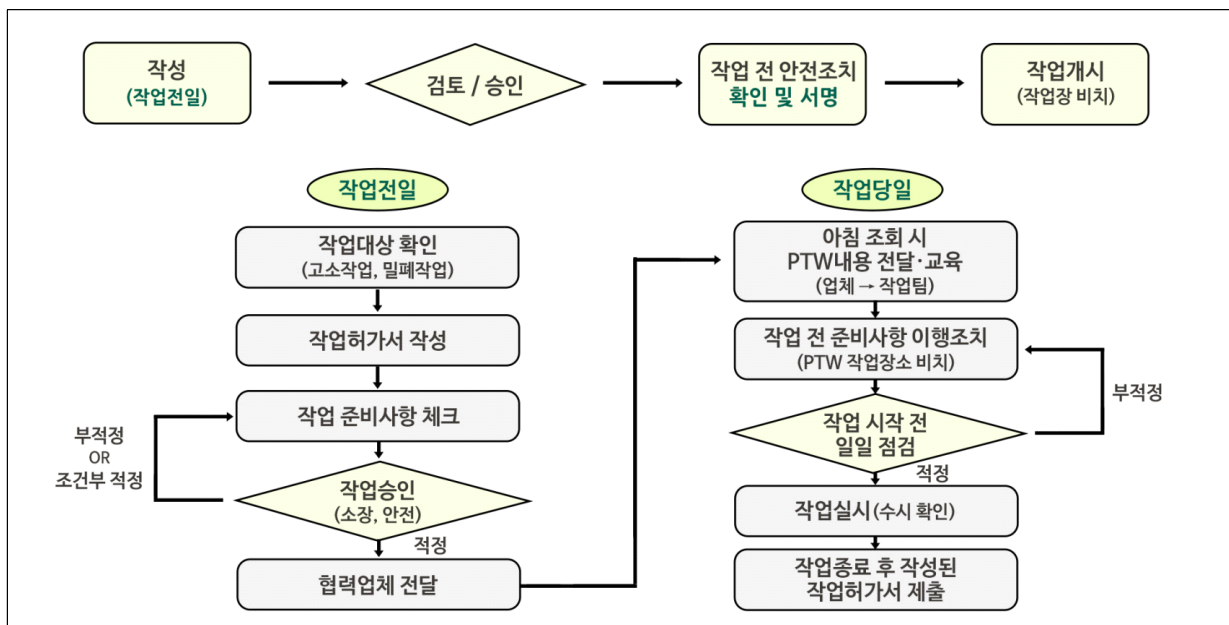
- 작업허가제는 고위험작업*의 경우, 작업자(협력업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부서의 검토·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

* 2m 이상 고소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관로 매설작업 등

2. 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작업허가제 대상공종)

- 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가설 및 본 구조물 등 주변과의 2m 이상의 단차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 ② 깊이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 ③ 가설구조물 설치 및 해체 작업
(높이 31m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 거꾸집 또는 높이 5m이상인 거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공보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 ④ 밀폐공간 작업
(구조체가 완성된 맨홀, 저수조 등 내부에서의 작업, 동절기 양생구간 작업 등 질식위험작업)
- ⑤ 그 밖에 현장별 작업 전 사전 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작업으로 분류된 공사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작업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용)
- ⑥ 철골 구조물 공사 및 승강기 설치공사
- ⑦ 악천후 발생시
 - 일최고 체감온도 33도 초과 또는 일최저온도 영하 12도 이하일 때
 -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를 초과할 때
 - 3시간 강수량 60mm이상 또는 24시간 이상 신적설 5cm이상 예상될 때
- ⑧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
(모든 작업 원칙 금지, 다만 긴급 보수 및 보강공사 등 감독 승인의 경우는 제외)

3. 작업허가제 절차



서식 10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내선#1)

■ 평가대상 : 전기 일반배관 작업			■ 실시일자 :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 ☐ 상 중 하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2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 중 사고	☐ ☒ ☐ 상 중 하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3	자재를 상부에서 받던 중 낙하, 추락	☒ ☐ ☐ 상 중 하	자재를 받는 장소는 추락,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자재를 인양				
4	박스 보강용 철근 부착 작업 시 조립되어 있는 철근에 창상	☐ ☒ ☐ 상 중 하	박스 설치 부위는 보강 철근을 조립하고 작업 시 안전장갑을 착용				
5	박스의 흠, 모서리 등에 창상	☐ ☒ ☐ 상 중 하	가공된 박스의 절단면 날카로운 부위 제거, 안전장갑 착용				
6	A형사다리 최상단에서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 ☐ 상 중 하	사다리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대 B/T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 부득이 사다리 작업 시 최상단 작업 금지				
7	사다리의 전도로 추락	☒ ☐ ☐ 상 중 하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설치,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8	철근 위를 이동하면서 작업 중 전도	☒ ☐ ☐ 상 중 하	철근 위 이동 등 작업 시 주의하여 이동(안전통로 확보)				
9	작업장의 현황(개구부 등)을 파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 ☐ 상 중 하	작업 전 슬라브의 위험요소 및 현황을 파악 교육 후 작업 실시				
10	강관 절단 가공작업 시 비산물질에 의한 사고	☐ ☒ ☐ 상 중 하	강관 절단 가공 등 작업 시 고속절단기 고정 및 커버 설치,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철저				
11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 강관 밴딩 작업 시 넘어짐	☐ ☐ ☒ 상 중 하	인력으로 밴딩 작업 시 적당한 힘을 주고 작업하고 마지막 힘은 서서히 사용하여 작업				
12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CD관에 발이 걸려 넘어짐	☐ ☒ ☐ 상 중 하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13	CD관 끝부분에 테이핑 처리 미흡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시 CD관으로 몰탈이 들어감	☐ ☐ ☒ 상 중 하	CD관 노출 끝부분은 청테이프 등으로 막음				

서식 11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내선#2)

■ 평가대상 : CABLE TRAY 설치작업			■ 실시일자 :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TRAY 단품조립 및 설치구간으로 이동시 손으로 들고 이동 중 전도	☒ ☐ ☐ 상 중 하	자재 이동용 대차를 이용하여 설치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				
2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 ☐ 상 중 하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3	사다리 작업 중 사다리 전도, 추락	☒ ☐ ☐ 상 중 하	작업에 알맞은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사다리는 2인 1조 이상 작업, 아웃트리거 및 미끄럼 방지조치 후 작업				
4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 ☒ ☐ 상 중 하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 발코니 등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5	앵카드릴 작업 시 테이블 리프트 상부에서 고소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걸고리 미체결시 추락 위험	☒ ☐ ☐ 상 중 하	앵카드릴 작업 시 테이블 리프트 내부 생명선에 안전대 걸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6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 ☐ 상 중 하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 내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7	B/T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	☒ ☐ ☐ 상 중 하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 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8	행거설치 작업 시 콘크리트 잔재를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 ☒ ☐ 상 중 하	행거설치 작업 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				
9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 ☐ 상 중 하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10	드릴을 사용하여 TRAY 천공시 공구사용불량으로 굴절	☐ ☐ ☒ 상 중 하	손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가공할 것				
11	핸드그라인더 사용시 볼티비산 안구손상	☐ ☒ ☐ 상 중 하	보안경 착용 철저				
12	작업 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 ☒ ☐ 상 중 하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13	케이블 트레이 모서리에 근로자 접촉 손가락 베임	☐ ☐ ☒ 상 중 하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서식 12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외선#1)

■ 평가대상 : 가선공사			■ 실시일자 :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작업 전 회의 참석자 누락 및 위험예지활동 미비로 미참석자 작업상황 인지 부족	☒ ☐ ☐ 상 중 하	작업 참여자 전원 참석 확인, 작업별 인원 소분된 위험예지활동(T.B.M) 실시				
2	공사현장 주변 교통대책 미강구로 인한 차량충돌	☐ ☒ ☐ 상 중 하	교통 안내요원배치, 라바콘 설치, 교통안전교육				
3	가선작업 시 로프의 결속 불량으로 낙하	☒ ☐ ☐ 상 중 하	가선 작업 전 로프장비 검사 후 작업 시행				
4	절연버켓 임의 구조변경에 의한 버켓 분리로 추락	☒ ☐ ☐ 상 중 하	절연버켓 임의 구조변경 금지				
5	절연버켓 내함 바깥측에 안전고리 설치 위치 변경으로 공구 낙하	☒ ☐ ☐ 상 중 하	안전고리 설치 위치 변경 금지				
6	도로 및 통행로구간 바닥면 전선 보호조치 미비로 통행차량 사고 또는 통행인 부상 위험	☐ ☒ ☐ 상 중 하	도로 및 통행로구간 바닥면 전선 방치 금지, 불가피할 경우 감시인과 통행 유도자 배치, 도로 또는 통행로 진입로측 위험표지판 설치				
7	활선용장선기 인성쇄클 고정구간 고리 혹은 해지장치 미사용 또는 탈락상태 작업으로 케이블 이탈에 의한 사고 위험	☒ ☐ ☐ 상 중 하	활선용장선기 인성쇄클 고정구간 고리 혹은 해지장치 부착상태 확인하여 고정 실시				
8	근접선로 충전부 방호 미흡(감전)	☒ ☐ ☐ 상 중 하	충전부 방호 시행				
9	가선 중 작업차 불균형(전도)	☒ ☐ ☐ 상 중 하	아웃트리거 설치				
10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추락	☒ ☐ ☐ 상 중 하	작업 전 안전장구 착용 점검				
11	고소작업 시 공구 및 자재 낙하	☐ ☒ ☐ 상 중 하	지상감시자 배치 자재운반 시 달줄, 달포대 사용				

서식 13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서식 예시 [외선#2]

■ 평가대상 : 지중케이블 포설 및 접속			■ 실시일자 :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개인안전장구 미착용으로 감전 등	☒ ☐ ☐ 상 중 하	개인 안전장구 착용				
2	산소농도 부족에 의한 질식	☒ ☐ ☐ 상 중 하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3	아웃트리거 지반침하로 크레인 전복	☒ ☐ ☐ 상 중 하	받침대 적정 규격품 사용				
4	인양하중 초과로 인양물 낙하 충격	☐ ☒ ☐ 상 중 하	와이어로프 안전하중표 운영				
5	회전중인 크레인에 작업자 머리 충격	☒ ☐ ☐ 상 중 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수립, 시행				
6	케이블 로라 및 활차이탈로 작업자충격	☒ ☐ ☐ 상 중 하	로라 및 활차 고정상태 확인				
7	활선케이블 착오절단으로 감전	☒ ☐ ☐ 상 중 하	중성선 불평형 전류 측정				
8	압축기(케이블커터) 조작미숙으로 손가락 절단	☐ ☒ ☐ 상 중 하	장갑 착용				
9	반지, 손목시계 등 착용상태로 작업중 충격, 끼임	☐ ☒ ☐ 상 중 하	개인 복장 확인				
10	활선선로 접지선 분리 시 감전 (단상 3선식 지상변압기 접지선 분리시 상전압 유기)	☒ ☐ ☐ 상 중 하	검전기로 검전				
11	작업용 임시 전원선 누전으로 감전	☒ ☐ ☐ 상 중 하	방수형 누전차단기 사용				
12	협소한 공간에서 접속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	☐ ☒ ☐ 상 중 하	휴식 및 스트레칭				
13	내부작업시 더위에 의한 탈수	☒ ☐ ☐ 상 중 하	환풍장치 사용				

참고자료 ⑥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개요



참고자료 ⑦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방법 소개 및 주요 특징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업종·규모·공정의 복잡성 등 여러 특징을 고려하여,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의 4가지 방법이 있음 (4가지 방법 중 1가지 이상은 수행하여야 함)

①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

④ 빈도·강도법

- 위험성평가 방법은 위험성평가의 전체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과정에 주로 적용

* ① 사전준비 →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⑤ 근로자 공유 및 결과의 기록 (+)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 본 지침서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3단계 판단법을 예시로 활용함**
- 단, 발주처마다 준용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 위험성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위험성 평가 방법 주요 특징

평가방법	주요특징	권장 사업장
3단계 판단법	•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쉬움 •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 할 수 있음 •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	중·소규모 사업장
체크리스트법	• 간단함, 빠른 결정 가능 • 신뢰성 및 일관성이 높음 •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이 수행 가능 •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 지식 등 전문적인 능력 요구	중·소규모 사업장
핵심요인기술법	•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기 효율적 •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함 •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움	중·소규모 사업장
빈도·강도법	•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결정 과정의 신뢰도가 높음 • 빈도, 강도의 기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이해 없이 진행하기 어려움	모든사업장

참고자료 ⑧ [재해예방 기법] 위험성평가 세부 작성 절차 (3단계 판단법)

■ 3단계 판단법

1. 정의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2. 절차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② 위험성 결정

•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안전조치 실시

3.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허용가능여부
상	매우 높음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서식 1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역서 및 예산 집행 관리대장

1. 안전·보건예산 편성

		결			사업주 등
		재			

안전·보건 예산편성 내역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전년도)	2025년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질환 예방		
	·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 행사 및 포상 - 캠페인 및 홍보		
예비	· 예비비		

2. 안전·보건 예산집행 관리대장 작성

안전·보건 예산집행 관리대장

구분	집행일	집행비용 (단위 백만원)	집행항목	내역
1	00. 00. 00.	00000	안전분야	안전보호구 구입 (안전모, 안전벨트 등)
2	00. 00. 00.	00000	인력 및 시설분야	타워크레인 3대 안전검사 비용
3				
4				
5				
6				
7				
8				
9				
10				

3. 안전·보건 예산집행 점검

결 재			사업주 등

안전·보건 예산집행 점검표

(점검일자 : 0000. 00.00)

(단위:백만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율 (%)	개선 조치
계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질환 예방				
	·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 행사 및 포상 - 캠페인 및 홍보				
예비	· 예비비				

참고자료 ⑨ 예산 편성 원칙 수립

예산 편성 원칙

1. 기본원칙

-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2.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함
- 특히,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의미함

※ 전기공사 관련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필요 인력

- 「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구 분	배치기준
모든 전기공사	특급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사용전압 100,000볼트 이하 전기공사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 전기공사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3.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매뉴얼에 따라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함

< 안전·보건 관련 권장장비 목록 예시 >

구 분		기 기 명	용 도	보유 현황
안 전 관 리	1	산소농도측정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	
	2	복합가스농도측정기 (5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가연성가스 측정	
	3	절연저항측정기	전자기기나 배선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들의 직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계측기	
	4	접지저항측정기	접지 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을 측정	
	5	검전기	전선로 등의 활선, 사선 상태 측정	
보 건 관 리	1	조도측정기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 측정	
	2	표면온도계	금속을 비롯한 각종 물체의 표면 온도를 측정	
	3	혈압계	팔 밴드와 압력계로 이루어진 측정기	
	4	혈당측정기	적절한 혈당 관리를 위한 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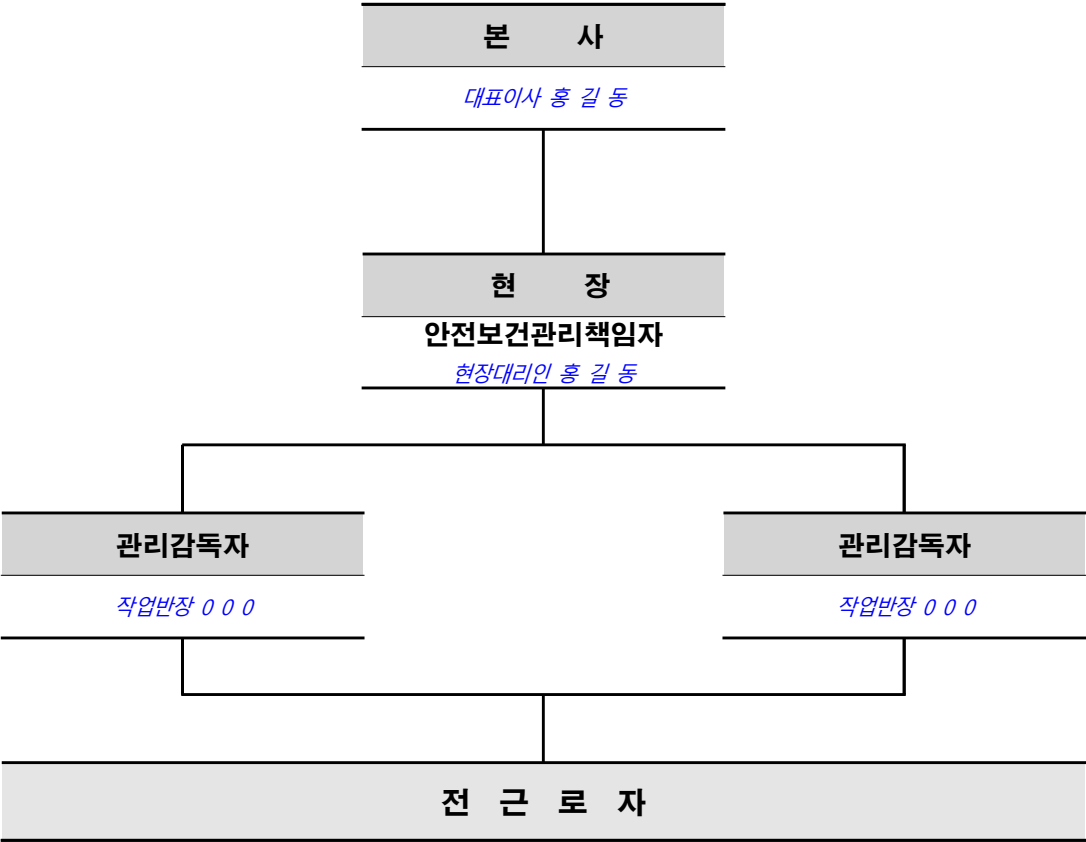
-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함

참고자료 ⑩ 안전보건관련 예산항목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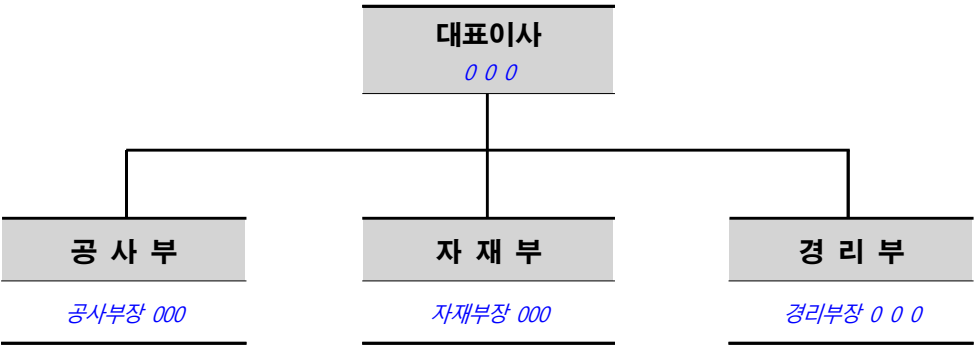
구 분		상 세 내 역
1	방호장치, 안전장치 구입비용	■ 프레스 등 방호장치, 급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	안전보건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 안전보건물품 : 각종 안전표지, 소모성 물품 구입비, 물품 수리·관리비 등 ■ 보호구 : 귀마개, 보안경, 안전화, 안전모, 각반 등 ■ 건강관련 물품(AED, 혈압계 등)
3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 위험시설의 안전환경 시설 개선비용
4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위험기계·기구·설비, 지게차 등의 안전점검 비용 ■ 기타 시설물 점검 비용
5	안전보건진단, 위탁, 컨설팅	■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비용
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작업환경측정비용 : 위탁비용 또는 자체측정을 위한 측정 장비 등의 구입비 ■ 특수건강진단비용 : 종사자의 건강지표를 보기 위한 특수 건강진단 소요비용
7	공상자 치료 및 응급구조	■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공상자 관련 진료·치료비 ■ 응급구조 관련 물품(AED, 사설 앰불런스 등)
8	종사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훈련비	■ 종사자 : 강사비, 자료수집비, 출장비, 교제제작비, 교육운영비 등 ■ 관리감독자 : 교육비, 출장비 등 ■ 사업주 : 교육참여비, 출장비 등
9	안전보건관계자 외부교육 및 훈련비	■ 직무교육 : 교육비, 출장비, 교통비 등 ■ 훈련 : 전문기관 가입비, 학회 및 협회 참가비 등
10	안전보건 포상비	■ 우수참여자 : 상금 또는 상품에 필요한 비용, 행사비용 등 ■ 안전보건경진대회, 위험발굴자포상 관련 비용 등
11	안전보건활동 추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비	■ 캠페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2	안전보건조직 운영 및 재해예방 인력비	■ 회의비, 운영비, 출장비, 유관기관 협력비 등
13	협력업체 관리비	■ 협력업체 업무 지원 및 감독 관련 비용 등

서식 1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이상 ~ 50억 미만)

1) 개별 공사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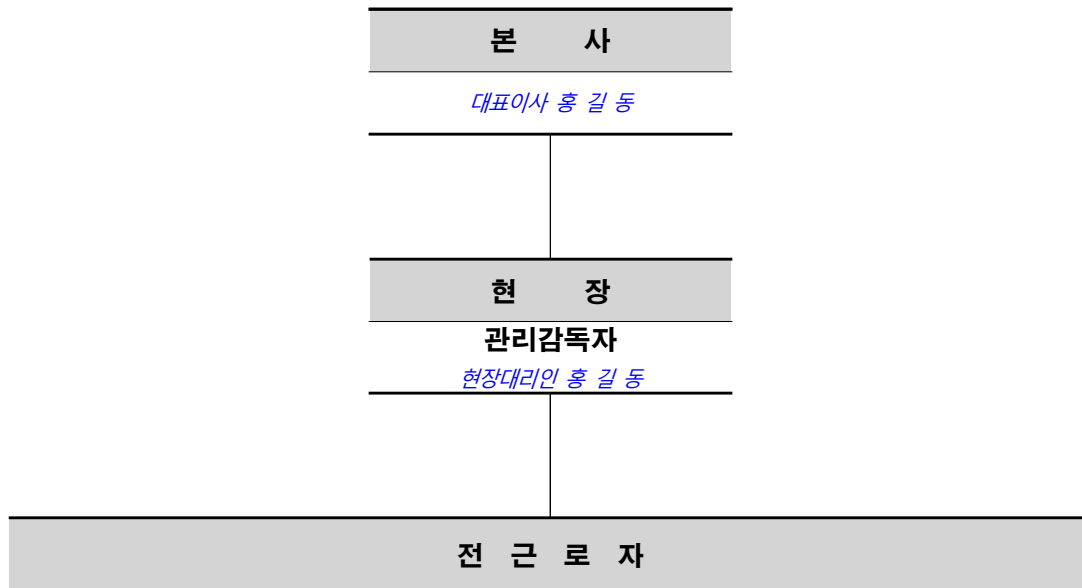


2)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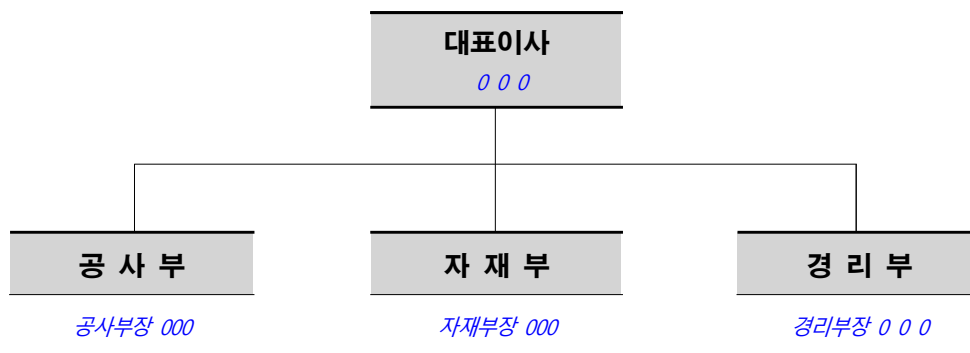


서식 1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예시 (공사금액 20억 미만)

1) 개별 공사현장



2) 본사



서식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대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대장

구 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확인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1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2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3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4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5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 · ·					
※ 적용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장	도급인이면서 총공사금액 20억원 또는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서식 18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1. 선임자	
○ 소 속	
○ 현 장 명	
○ 직 책	
○ 성 명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등	(직인)

서식 19 선임계 작성 (관리감독자, 모든 사업장)

관리감독자 선임서

1. 선임자	
○ 소 속	
○ 직 책	
○ 현 장 명	
○ 성 명	
2. 관리감독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등 (직인)	

서식 20 **선임계 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이면서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

1. 선임자	
○ 소 속	
○ 현 장 명	
○ 직 책	
○ 성 명	
2.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3조 각 호에 따른 업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등 (직인)	

서식 2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정	부적정
기계기구 (시행령 제10조 제1항)	1.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이상유무 점검		
	2. 안전검사 설비의 정상작동 유무 점검		
	3.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사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보호구 점검과 그 착용·사용	4. 안전보호구의 적격품 구입여부		
	5. 안전보호구의 적격품 지급 및 착용여부		
환경, 시설물	6.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감독 결과		
	7.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8. 소음, 분진, 조명등의 상태		
	9. 소화시설의 상태		
	10. 안전표지판의 상태		
작업자	11. 작업복은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는가?		
	12. 보호구를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는가?		
	13. 불안정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14. 작업점과 신체가 접촉을 하지는 않는가?		
	15. 불안정한 상태가 방치되지는 않는가?		
기타	16.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17.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18. 하역, 운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불량판정에 대한 조치 사항			
점 검 자 (관리감독자)		확 인 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서식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표					
사업장명 : _____		평가일자 : 년 월 일			
직 책	성 명	담당업무	평가기준		
			미흡	보통	양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1.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당해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집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안법 제62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집행에 관한 사항			

※ 평가기준 (반기 1회 이상 평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 달성 및 재해예방 기여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기재하고 당사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평가자(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 _____
(서명)

참고자료 ⑪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구 분	적용 사업장	주요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제15조) *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원 ↑ - (제조) 50명 ↑ - (기타) 100명	1. 산재예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4.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6.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관리감독자 (제16조)	• 모든 사업장	1. 해당 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2.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3.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4.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5.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제62조)	• 도급 사업 시 •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원 ↑ - (제조) 100명 ↑ - (조선, 토사석 광업 등) 50명 ↑	1. 위험성평가 실시 2. 사업주의 작업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5.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참고자료 ⑫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작성 · 공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직 책	성 명	담당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1.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당해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안법 제62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서식 23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 대장

1.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대장 작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대장

구 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확인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1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2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3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4	성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5	성 명				(서명)
	직 책				(서명)
	선임일				(서명)
• • •					
※ 적용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서식 24 선임계 작성 서식(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 이상)

1)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서

1. 선임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2.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등	(직인)

서식 25 선임계 작성 서식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2)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서

1. 선임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2. 보건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2 제1항 조 각 호에 따른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역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1)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2)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3)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로 선임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등	(직인)

서식 26 선임계 작성 서식(산업보건익)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산업보건의 선임서

1. 선임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2. 산업보건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로 선임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 (직인)		

서식 27 전문인력 선임 보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 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		발주자 또는 도급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명)		
	굴착깊이(M)*	건축물 · 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연면적(m ²)*	건축물의 최대층고(M)*		
	PC(Precast Concrete)조립작업 유무*	다리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안전관리자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 · 월 · 일			
	전담 · 겸임구분			
보건관리자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 · 월 · 일			
	전담 · 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 · 월 · 일			
	전담 · 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향				
이 건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제출]

서식 28 안전일지 작성 [안전관리자 선임 시]

안전일지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구분	확인 및 점검 사항			
안전점검	점검사항	이상상태	조치내용	
금일주요작업 및 주의사항	금일 주요 작업		주의사항	
안전교육 (실시 시)	교육 구분	교육 인원	교육 시간	교육 내용
특이사항				
재해현황 (발생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재해 정도
	재해 상황 작성 (간략하게)			
점 검 자 (안전관리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서식 29 안전·보건 전문인력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 예시

1)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관리대장

안전관리자(겸직) 업무수행 관리대장

사업장명 :		성명 :	
구분	수행일시	업무내용	확인 (현장 소장 및 사업주등)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 • •			

2)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관리대장

보건관리자(겸직) 업무수행 관리대장

사업장명 :		성명 :	
구분	수행일시	업무내용	확인 (현장 소장 및 사업주등)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 • •			

3) 산업보건의 업무수행 관리대장

산업보건의(겸직) 업무수행 관리대장

사업장명 :		성명 :	
구분	수행일시	업무내용	확인 (현장 소장 및 사업주등)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 • •			

참고자료 ⑬ 발주기관별 배치인력 현황

구 분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공사현장		철도	도로 및 인도 등	고속도로
배 치 인 력	의무배치인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¹⁾ 전기철도안전관리자 ²⁾ 안전관리자 ³⁾	안전관리자	
		-	유도자 ⁴⁾	
		-	사다리 보조작업자 ⁵⁾	
	개별 지침에 따른 배치 인력	열차감시원 안전요원 순시원	감시원	신호수 교통 감시원 도로안전통제원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등)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 안전관리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4) 유 도 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5) 보조작업자 :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참고자료 ⑭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구 분	적용 사업장	선임자격	주요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제15조) *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원 ↑ - (제조) 50명 ↑ - (기타) 100명	실질적 사업장 총괄·관리자	1. 산재예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4.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6.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안전관리자 (제17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50억원 ↑ - (제조 등) 50명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1.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2.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제18조) * 300명 ↑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원 ↑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 ※ 토목공사는 1,000억원 ↑ - (제조 등) 50명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1.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2.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3.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4.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제22조)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산업보건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업종별 상이 - (건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 ↑ 사업장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1.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2.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참고자료 ⑮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직 책	성 명	담당업무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직의 직무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의 (산안법 제22조)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서식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개최 관리대장 작성

결 재			사업주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년 분기)

회의 개요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구분	(정기, 임시)
심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사진					
내용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자 명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NO	직책	성명	서명	NO	직책	성명	서명
1	위원장		(서명)	1	근로자대표		(서명)
2	안전관리자		(서명)	2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서명)
3	보건관리자		(서명)	3	위 원		(서명)
4	위 원		(서명)	4	위 원		(서명)
5	위 원		(서명)	5	위 원		(서명)
6			(서명)	6			(서명)
7			(서명)	7			(서명)
8			(서명)	8			(서명)
9			(서명)	9			(서명)
10			(서명)	10			(서명)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인원 10인이내 제한)

서식 3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결 재			사업주 등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회의 개요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구분	(정기, 임시)
심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사진					
내용		내용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자 명단

안전보건협의체 대표 참석자 명단							
도급인대표				수급인(협력업체)대표			
NO	소속	성명	서명	NO	소속	성명	서명
1			(서명)	1			(서명)
2			(서명)	2			(서명)
3			(서명)	3			(서명)
4			(서명)	4			(서명)
5			(서명)	5			(서명)
6			(서명)	6			(서명)
7			(서명)	7			(서명)
8			(서명)	8			(서명)
9			(서명)	9			(서명)
10			(서명)	10			(서명)

서식 32 노사협의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서식

결 재			사업주 등

노사협의체 회의록 (년 월)

회의 개요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구분	(정기, 임시)
심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사진					
내용			내용		

노사협의체 참석자 명단

노사협의체 위원 참석자 명단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NO	직책	성명	서명	NO	직책	성명	서명
1	위원장		(서명)	1	근로자대표		(서명)
2	안전관리자		(서명)	2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서명)
3	보건관리자		(서명)	3	위 원		(서명)
4	위 원		(서명)	4	위 원		(서명)
5	위 원		(서명)	5	위 원		(서명)
6	위 원		(서명)	6	위 원		(서명)
7	위 원		(서명)	7	위 원		(서명)
8	위 원		(서명)	8	위 원		(서명)
9	위 원		(서명)	9	위 원		(서명)
10	위 원		(서명)	10	위 원		(서명)

서식 33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서식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별지(서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날 씨 :)							
업 체 명					TBM 장소			
작 업 명								
■ 작업 내용 및 TBM 전달 내용								
※ 주요 작업내용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 근로자의 작업안전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재해/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참석 유도								
연번	이 름	서 명	연번	이 름	서 명	연번	이 름	서 명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서식 34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결과 관리대장 및 종사자 의견청취 이행 결과 보고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결과 관리대장

사업장명 :						
구 분	일 시	청취방법	주 요 내 용	조 치 내 역		확 인 (현장소장 및 사업주등)
				조치일	조치사항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결 재			사업주 등

종사자 의견청취 이행 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2024. 00.00)

사업장명 (현장명)	의견사항	조치 결과		비고
		조치완료	조치 중	
0000	00현장 절연복 노후화로 인한 교체 요청	✓		

참고자료 ⑯ 산업안전보건법 상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근거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
설치대상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원도급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 작업 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실시주기	분기(3개월)	매월	2개월
구성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갈음유무	-	-	*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주요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도급시 이행)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구성하는 협의체
논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근로자안전보건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존재 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

서식 35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추락사고 경우 예시)

[추락사고] 대비·대응조치 점검표			
구 분	단 계	점 검 내 용	확 인
대비 단계	사전활동	추락방지 조치 여부 1순위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2순위 : 추락방호망 설치 3순위 : 안전대걸이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걸기	
	준비활동	조명 설치 및 유지 여부 (보통작업 150LUX이상, 정밀작업 300LUX이상,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비계작업발판 설치기준 점검 여부	
		안전난간 설치기준 점검 여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점검 여부	
		개구부 방호조치 점검 여부	
	작업활동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여부	
대응 단계	비상상황	비상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 * 작업자 추락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추락방호망에 걸친 상태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가능 여부	
	상황전파	위험상황에 대한 타근로자 전파 가능 여부	
	추가피해 방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여부 (추가추락 또는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보완조치)	
	구조	구조장비(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투입 가능 여부	
	응급조치	재해자 상태에 따른 응급조치 계획 수립 여부	
	인계	119, 112로 재해자 인계 및 발생상황 설명 여부	
	현장 보존	작업장 통제, 사진, CCTV 확보 등의 현장보존 계획수립 여부	
	조사	내부조사 계획수립 및 외부기관 조사협조 가능 여부	

서식 36 재해별 위험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작성 [전기감전사고 경우 예시]

[전기감전사고] 대비·대응조치 점검표			
구 분	단 계	점 검 내 용	확 인
대비 단계	사전활동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 (기준 38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법 14조, 시행령 별표 2 17항)	
		면허·자격 보유 여부 확인(취업제한규칙 별표 1 2항) (전기설비 취급작업)	
		전기작업 절차 교육 및 숙지	
		응급조치장비 준비 및 사용법 교육 (들것, 구급약 세트)	
		감전 피해자 응급조치법 교육	
	작업 전 준비활동	충전부 방호조치 (기준 301조)	
		누전으로 인한 감전예방을 위한 접지 실시(기준 302조)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304조) 및 test	
		모든 전기작업은 전원 차단 후 작업 (기준 319조)	
		전원 차단 후 임의로 전원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분전반/배전반 잠금장치 열쇠는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지	
		연장선(리드선) 누전차단기 점검	
		절연보호구 착용	
	작업활동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여부	
대응 단계	비상상황 발생	비상상황임을 인식 * 누전, 잔류전기, 충전부 접촉으로 작업자 감전(상태) * 전기충격으로 인해 작업자 부상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지시, 대피	
	전원 차단 (불필요한 경우 생략)	전원차단 * 2차감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원공급 차단 * 필요한 경우 전원차단 요청	
	2차 사고 예방조치 (불필요한 경우 생략)	2차 사고예방 조치 2차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 전원차단 * 전도체 제거	
	상황전파	상황 전파 또는 전파 지시 (장소, 피해상황)	
	구조	재해자 상태에 따른 응급조치 계획 수립 여부 * 호흡기도 유지 * 지혈 * 안정유지 * 불필요한 이동 금지(내부화상)	
	응급조치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외부기관 인계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보존	작업장 통제(출입금지조치)	
		공식적인 사고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조치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사고 조사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서식 3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작성

1. 대응·조치 매뉴얼 작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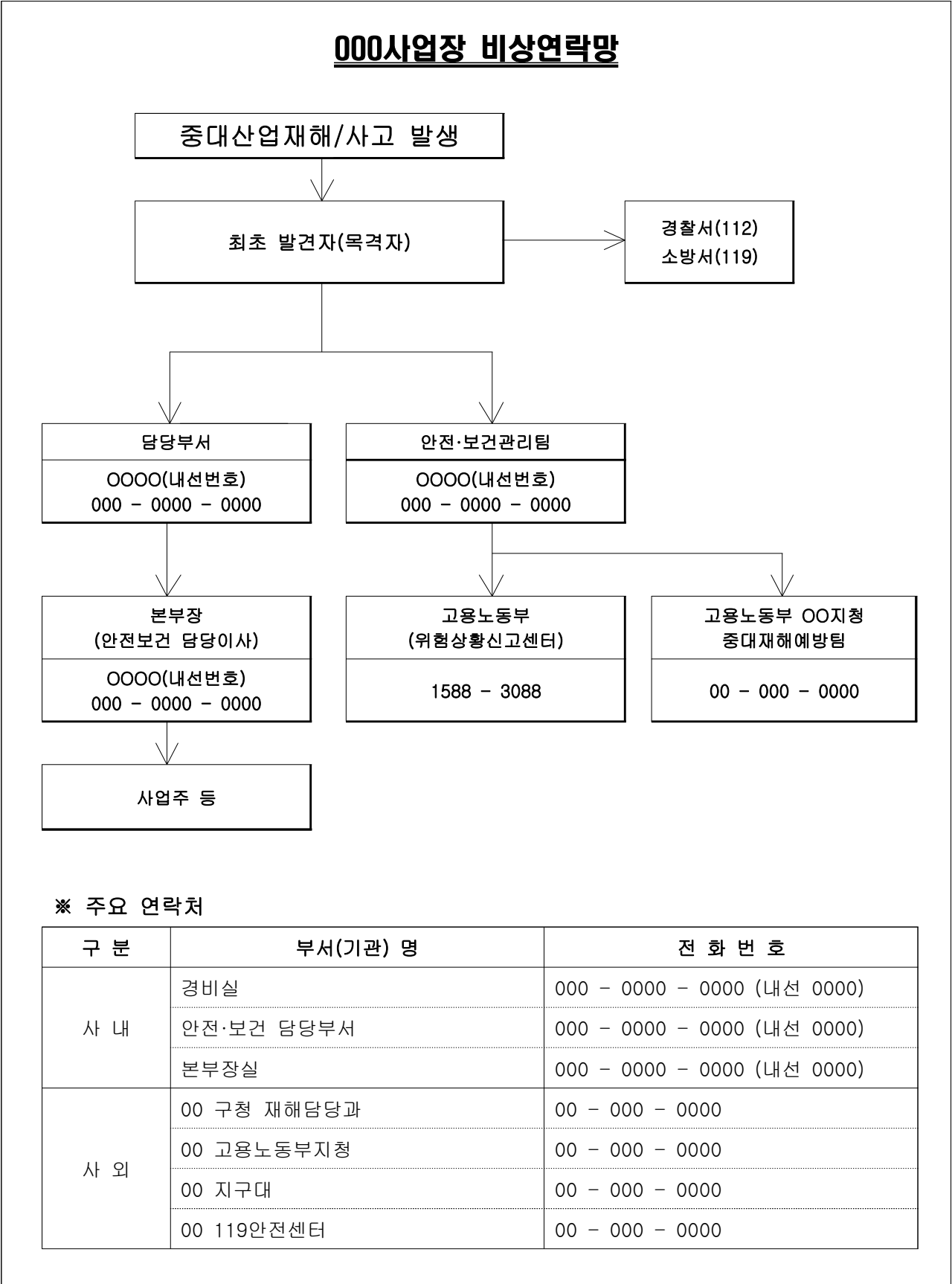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개선사항			
	적정	부적정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관리감독자(담당자) 보고 및 모든 근로자에게 전파하도록 절차 규정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	현장보존 계획 세분화 필요			
관할 고용노동청 및 119 등 관련 기관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신고 규정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비롯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포함 작업중지 절차화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관계자의 현장의 출입통제 절차 규정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및 그 가족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 규정 여부		✓	재해자 및 가족 사후관리 절차 필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갱신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재발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여부	✓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예방코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대피 훈련 등의 사전대응 훈련 진행 여부	✓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 검 자		확인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2. 대응·조치 매뉴얼 작성

대응·조치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발생	■ 발생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 최초 발견자는 재해발생 장소 및 환자상태를 관리감독자에 즉시 연락 ※ 비상연락망 갱신·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의 발생시 119 또는 112 등에 즉시 신고	최초 발견자
↓		
사고자 응급조치	■ 지혈장비 또는 구급키트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중환 경우 119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최초 발견자 관리감독자
↓		
사고현장 처리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현장 보존 ■ 2차재해 등의 발생우려에 따른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작업 중지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관계자 외 현장 출입통제	관리감독자
↓		
이 송	■ 재해자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 ■ 119 또는 112에 따른 지시업무 수행 ■ 재해자 보호자에게 재해자 상황 및 상태 알림	관리감독자
↓		
사후관리	■ 보고대상인 경우 관계기관으로의 사고발생 보고 (고용노동부 등) ■ 재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보상 및 관리 ■ 재해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해당사항 전직원 공유를 통한 경각심 강조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사전 실시 ■ 교육을 통한 훈련 또는 시뮬레이션 실시 ■ 작업자 안전보건장비 현행화 ■ 개선 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사업주 등

3. 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 작성



4. 비상 훈련 실시 계획서

비상 훈련 실시 계획서

1. 목적

- 본 비상훈련 실시 계획서는 사업장 0000의 사고 또는 비상사태의 유형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이와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

2. 훈련 중점내용

-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대처, 피해보고체제 구축
- 재해대책 유관기관과 상황공조 등 협조체제 강화
- 인명구조, 응급복구, 구호 등 사태 처리능력 제고 등
- 각 반별 개별임무 및 역할 숙지
- 신속한 재해 상황 보고 및 상황대처능력 강화
- 훈련결과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강구

3. 훈련 행동요령

구 분	현 장	본 사	비고
최 초 사 고 시	■ 비상소집 및 정위치 근무 ■ 보고계통에 따른 최초보고 ■ 응급조치 및 재해자 후송 ■ 복구 인원, 장비동원 조치	■ 비상소집 및 정위치 근무 ■ 보고계통에 따른 본사 최초보고 ■ 세부사고 현황 파악 ■ 사고수습 대책기구 가동	
현 장 수 습	■ 인명 피해 시 인명구조 최우선 ■ 세부현황 파악 및 사고보고(2차) ■ 사고현장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출입자 통제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의 과장, 확산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 사고현장 원경 및 부분별 근접사진 촬영으로 기록유지	■ 사고수습 대책을 포함한 중간보고 ■ 세부현황 파악 및 보고서작성 ■ 사고대책반 현장지원 가동 ■ 언론 응대자료 검토	
복 구 완료 후	■ 보고계통에 따른 최종보고	■ 보고계통에 따른 최종보고	

5. 비상훈련 보유 물품 현황

구 분	명 칭	보유수량	비 고
	구급함	2 EA	
	안전테이프	2 EA	
	전자신호봉	10 EA	
	무전기	10 EA	

6. 비상대비 훈련 시나리오 작성 (추락사고 경우 예시)

[추락사고] 대비 훈련 시나리오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현장 보존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공장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환자 병원 후송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7. 비상대비 훈련 시나리오 작성 (감전 사고 경우 예시)

[감전 사고] 대비 훈련 시나리오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00:00~00:01 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00:01~00:06 환자 구조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2차 재해방지 조치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현장 보존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전기실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환자 병원 후송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8. 비상대비 훈련 관리대장 작성 (예시)

비상대비 훈련 관리대장

구 분	일 시 (장소)	참석인원	훈 련 유 형	훈 련 내 용	확 인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1	0000.00.00. 10:00~11:00 (OOO)	OO 명	추락사고대응	추락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훈련	(서명)
2	0000.00.00. 14:00~15:00 (OOOO)	OO 명	절식사고대응	환자 응급조치 훈련	(서명)
3	0000.00.00. 16:00~18:00 (OOOO)	OO 명	감전사고대응	감전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훈련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9. 비상훈련 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예시)

비상훈련 결과보고서

훈련유형		대상인원	
일 시		참가인원	
장 소			
훈련 내용	비상사태(관 부설 굴삭기 작업 중 접근 근로자 협착사고)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 및 비상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 처리, 복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점	실제 재해 발생 시 임시현장게이트 앰블런스 차량 현장진입에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		
대 책	현장 근로자에게 임무부여 및 교육실시하여 초동조치가 가능토록 재해관리		
비 상 계획서	수정여부	수정(조직도 및 시나리오 변경)	
	개정내용	훈련인원 추가로 인한 조직변경 및 개인별 업무분장 확인	
1. 훈련참여도 시공사 0000, 협력업체 0000 전원참여			
2. 비상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양호			
3. 개인별 임무숙지도 양호(개인별 임무카드 지참 및 별도교육, 사전예행연습 실시)			
4. 기 타			
첨부서류	사진대지 1부.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비상훈련 사진대지



내 용

관 부설 작업 중 근로자 협착사고 지점



내 용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 상황발생 유선보고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참고자료 ⑪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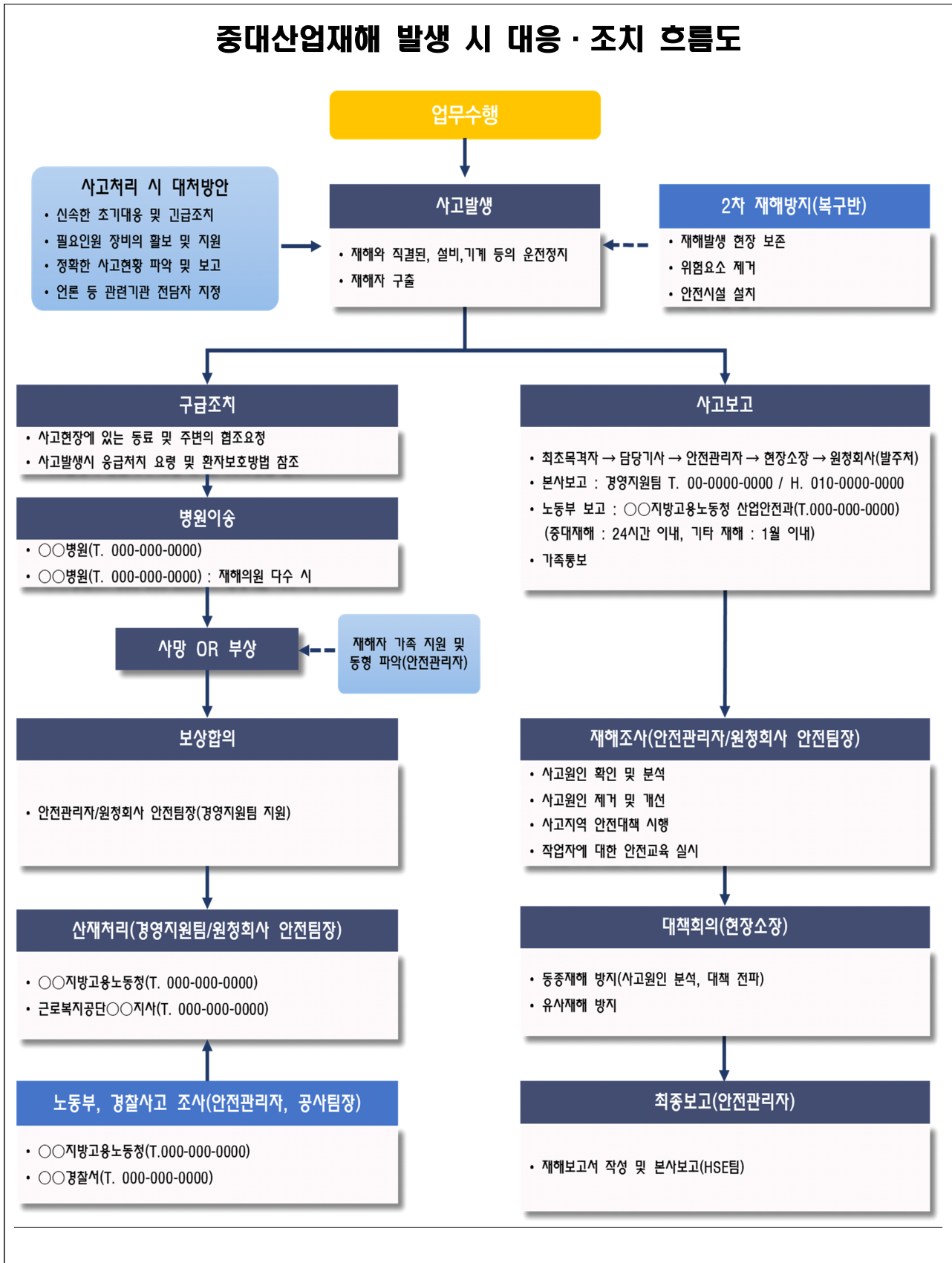
결 재			사업주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2022. 0. 0.

회사명 : 00 전기(주)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흐름도 작성



2.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준비서류

① 사업주 및 근로자 대응 요령

사업주 대응요령
1) 작업중지 및 대피 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산안법 제51조, 제54조)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 및 관련 서류 3년간 보존 (산안법 제57조제2항, 제164조제1항4호)
3)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안법 제56조, 산안법 제57조제3항)

근로자 대응요령
1)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 (산안법 제52조)
2) 신고 및 응급조치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부(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67조)
3) 현장보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산안법 제56조제3항)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준비서류

구분	순번	서류명	발급처	부수	비고
1. 안전사고 (필수서류)	1	요양신청서 (최초, 전원, 재요양)	현장	1부	의사소견 기재
	2	휴업급여 청구서	현장	1부	
	3	장해보상청구서	현장	1부	의사소견 기재
	4	근로계약서	현장	1부	
	5	노무비 지급명세서	현장	1부	사고 전 3개월
	6	사고현장사진	현장	1부	
	7	사고현장상황도	현장	1부	
	8	목격자 진술서 (최소2명)	현장	1부	
	9	본인진술서	사고자	1부	
	10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포함)	현장	1부	
	11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배서분 포함)		1부	
	12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관할공단	1부	회사제출용
2.건설기계 에 의한 재해	1	제1항 필수서류 일체	현장	각1부	
	2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1부	
	3	각서		1부	본인 날인
	4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장비업체	1부	
	5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장비업체	1부	
	6	사업자 등록증	장비업체	1부	
	7	건설기계조종원 면허증	장비업체	1부	앞, 뒷면
	8	주민등록증	장비기사	1부	앞, 뒷면
	9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사	각1부	
3.개인자동차 재해	1	제1항 필수서류일체	현장	각1부	노동부
	2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3	각서	본인	1부	
	4	차량등록원부	재해자	1부	
	5	자동차운전 면허증	재해자	1부	
	6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사	1부	
	7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관할경찰서	1부	

3. 중대재해 발생 및 수사 현황

- o 2022년 9월 기준 총 180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고용노동부는 25(13.9%)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업종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건설	74	82
제조	67	75
기타	39	46
합계	180	202

2)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제1호~제15호)

업체	사고내용	중대재해법 위반사항	선고형량
00파트너스	하도급 근로자 1명 추락사	-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개선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의무 미이행	00파트너스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00파트너스 및 하청 현장소장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00파트너스 안전관리자 : 벌금 500만원 00파트너스 : 벌금 3천만원, 하청업체 : 벌금 1천만원
00제강	하도급 근로자 1명 낙하물 충격 사망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의무 미이행	00제강 대표이사 :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하청 대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00제갈 : 벌금 1억원
00건설	재하도급 근로자 1명 거꾸집봉괴 충격 사망	- 안전보건경영방침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위기대응 조치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법인 : 벌금 5천만원
00건설	하도급 근로자 1명 굴착기 협착 사망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구비 등 필요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 벌금 5천만원
00건설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신호수가 떨어진 철근에 충격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법인 : 벌금 2천만원
00산업	작업 중 1.5m높이에서 추락사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 대표이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법인 : 벌금 3천만원
00건설	하청 철거업체 대표가 작업 중 무너진 굴뚝에 깔려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점검 등 위반	-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법인 : 벌금 8천만원
00산업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작업 중 16명에 독성 간염 발병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미이행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법인 : 벌금 2천만원

업체	사고내용	중대재해법 위반사항	선고형량
00철강	띠강 코일을 넘으려다 뒤로 넘어져 띠강에 허벅지가 베이고 이후 저혈당 쇼크로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미이행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 벌금 7천만원
00건설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의무 미이행	• 00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00건설 법인 : 벌금 8천만원
주식 회사00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에서 작업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구비 등 필요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미이행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 벌금 5천만원
00건설	다른 작업자의 리프트 상승 조작으로 리프트 내부에서 작업 중인 하청 직원이 협착되어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의무 미이행	• 00건설 대표이사 :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 • 00건설 법인 : 벌금 5천만원
00포장	운전 중인 편면기에 윤활유 주입 중 의복이 말려 들어가 협착되어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미이행	• 00포장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00포장 법인 : 벌금 8천만원
00개발	고소작업대 위에서 이동 중에 추락하여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의무 미이행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 벌금 8천만원
주식 회사00	다이캐스팅기계의 내부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구비 등 필요 예산 편성 미이행	• 대표이사 : 징역 2년, 실형 • 법인 : 벌금 1억 5천만원

※ 24년 4월 기준

3)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련 Q&A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와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 ⑤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문상 건설공사 발주자도 “도급, 용역, 위탁 등”에 해당하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다만, 일반적인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스스로 건설공사를 주도하여 실시할 만한 전문성이 없어 타인에게 건설공사를 맡긴 사람인 반면, 해당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을 총괄·조율하고 현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을 제어하는 주체는 공사를 맡은 사람, 즉 시공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⑤ 이와 같이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시공사이므로,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등(통상 대표이사)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시공사 소속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는 자(통상 현장 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그 산하의 관리감독자나 재해 원인을 유발한 작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 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전력공기업 K공사가 발주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K 공사의 전기공사업법상 지위, 배전 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 K공사의 (전임) 사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 2024. 4.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선고한 판결이 총 15건 있었습니다.
(위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1호~15호 참조)
- ☞ 위 15건의 판결을 보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주로 징역 1년 또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 전·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건은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 1)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전력이 있는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 2)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 ☞ 구체적인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5건의 판결은 모두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 요인 확인 절차 마련 등) 또는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위반을 지적하고 있는 등으로, 이 두 가지 의무가 법 위반사항으로 가장 빈번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 이에, 회사는 각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위 3호와 5호에 대한 의무 사항을 좀 더 비중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및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추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수사기관(노동청, 경찰)은 혐의 유무 확인을 위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노동청과 경찰은 별도로 진행함).
- ☞ 수사기관은 조사 대상 또는 현업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조사 대상자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조사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진술의 핵심은 잘 듣고 / 답변하기 전 잠시 생각하고 / 필요한 내용을 간명하게 답변해야 함
 - (2) 답변이 길어질 경우 불필요한 내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3) 조사내용과 무관한 내용(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적 내용, 추측 등)은 언급을 자제해야 함
 - (4) 질문의 취지가 사실에 대한 것인지, 생각 등을 묻는 것인지 구분하여 답변해야 함
 - (5) 사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과 사고 이후에 들은 사항 등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함. 행위 당시 몰랐던 사정을 차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 (6) 처음 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서류 제시한 경우 추후 명확히 확인 후 다시 진술하겠다고 답변해야 함
 - (7) 여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질문하는 경우 각각 분리하여 답변해야 함
 - (8)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시 진술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해야 함

4.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가 확보하여야 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만한 법률·적용 법조와 그 위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에 적절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개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세부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상 피의자 범위와 수사에 대한 대응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⑤ 이러한 대응 업무는 외부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공식적인 의견서 형태로 제공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⑤ 확보가 필요한 자료에는 경영책임자등 관련 자료, 안전관리책임라인 관련자료(안전관리책임 관련 회사 조직도, 결재서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자료(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일지, 안전수칙, 작업공정 및 공사관련 계약서 등), 사고 관련 공정에 대한 설명 자료(전체작업공정, 사고관련 세부공정 및 설비에 대한 설명자료 등) 등 사고원인 및 관련 쟁점 파악을 위한 제반 자료 등이 있습니다.
- ⑤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에 대해 제출 요구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 요구 자료 범위(압수 · 수색 시 대상물의 범위와도 연관됨)	
1. 인사 · 조직 관련 서류 및 자료	* 본사 및 사고 발생 사업장(이하 “사업장”)의 운영 관련 각종 인 · 허가 관련 서류(첨부자료 포함) / 임직원 명단 / 부서 및 직원별 업무분장, 내부 결재선, 전결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 업무지침 등
2. 영업 관련 서류 및 자료	* 본사 및 사업장 공사 계획서 / 공사 지시서 / 유지 · 보수 계획서 및 실시 보고서 / 주문 · 발주, 입 · 출고 및 판매 관련 서류 등
3. 예산 · 지출 관련 서류 및 자료	* 본사 및 사업장의 관리 · 운영에 사용하였거나 작성 · 보관 중인 현금 출납장 · 경리장부 · 회계자료 등
4. 안전 및 보건 관련 서류	가) 운영계획, 업무 보고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공문, 지침, 지시 등 관련 서류 및 자료 나) 안전 · 보건 전담조직 조직도, 업무분장표, 전담조직 인사자료, 전담조직에서 작성한 공문 · 보고서, 자격증, 교육 이수확인증 등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운영 및 그 구성원들의 자격 · 교육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다) 유해 · 위험 요인 확인 계획서, 실행 절차 검토서, 결과 보고서, 위험성평가 기획 · 실시 보고서 등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확인 ·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라)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역, 예산 편성 심의서, 예산 집행 내역, 예산 지출 절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시설 · 장비 · 인력 등 소요 제기 문서 및 그에 대한 검토 문서, 안전관련 부서와 예산 관련 부서의 협의 내용 · 회의록 · 품의서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의 구비와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5.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가 확보하여야 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사기관 제출 요구 자료 범위(압수 · 수색 시 대상물의 범위와도 연관됨)

- 마) 본사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등의 선임 · 지정서, 위임전결규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작성 · 보고한 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채용 · 인사 자료, 교육 이수 · 수료증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안전 · 보건 관련 조치 권한과 예산편성 · 지출 권한의 부여 여부 및 범위, 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바) 본사 및 사업장의 안전 · 보건 및 인허가 관련 필요 사항의 조사 · 평가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 · 단체 · 개인에게 위탁 · 위임 · 용역 · 도급 등을 하였을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수탁 · 수임 기관 등에서 작성한 지도서, 보고서, 용역결과서 등 서류 및 자료 서류, 자료와 관련하여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및 지불비용, 계약여부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된 자료, 본사 및 사업장에서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지시 · 보고 서류 및 자료
- 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계획서 · 절차서, 사업장에서 보고된 종사자 의견 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본사 내부 공문 · 보고서 · 지시서, 본사 및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계획 · 회의록 · 결과 보고서 등 안전 · 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아) 본사 및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위험 발생시 작업 중지 · 종사자 대피 · 위험요인제거 ·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 등 대응조치 방법과 절차 등을 기재한 매뉴얼, 이를 사업장에서 시달한 문서, 이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거나 점검한 자료 등 중대산업재해 위험 발생에 대한 대비 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자) 최근 10년간 본사 및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사자의 사망 · 상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조치 내역 및 이행결과보고 등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 이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차) 최근 10년간 본사 및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로부터 위임 · 수탁 등 법령상 권한을 수여받은 기관 · 단체 · 개인 등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령 · 조치 등을 받은 내역, 명령 · 조치 등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카) 최근 10년간 본사 및 전체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시민단체 · 인근 주민 · 종사자 등 공공 및 민간 기관 ·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민원 관련 서류 및 이에 대한 보고 ·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타) 본사 및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업에 관련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인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파)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자체 교육 규정, 교육대장 일지, 교육자료, 교육 미실시자 점검 및 추가 실시 내역, 본사 주관 점검 보고서 등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 · 보건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 하) 기타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일체

4) 외부 전문가 참여 요청 - 법무법인(유) 율촌

- 중대재해 발생 시 법무법인(유) 율촌에 즉시 연락하여 초기 대응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전화 : 02-528-5200
- 변호사 정원: 02-528-5283 wjung@yulchon.com
- 변호사 정대원: 02-528-5252, dwchung@yulchon.com
- 수석전문위원 김관우: 02-528-5299, kwanwookim@yulchon.com
- 노무사 이동현: 02-528-5827, dhlee@yulchon.com

4.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수사 개시

- 검찰의 지방노동청 지휘, 경찰의 자체 수사

1)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 받는 법적 책임

법 규	조 항	법 규정 내용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사팀장, 반장, 가해자)
산업안전 보건법	제63조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 관계수급인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 의무 (원청업체 소장, 원청회사 법인) •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함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사업주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협력 업체 현장소장/법인), 사망재해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 가능 • 위반하였으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준수 의무 •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위반하였으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 가능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가능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실질적인 지휘감독, 협력회사 소장)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도급인이 지시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도급인, 수급인 부진정연대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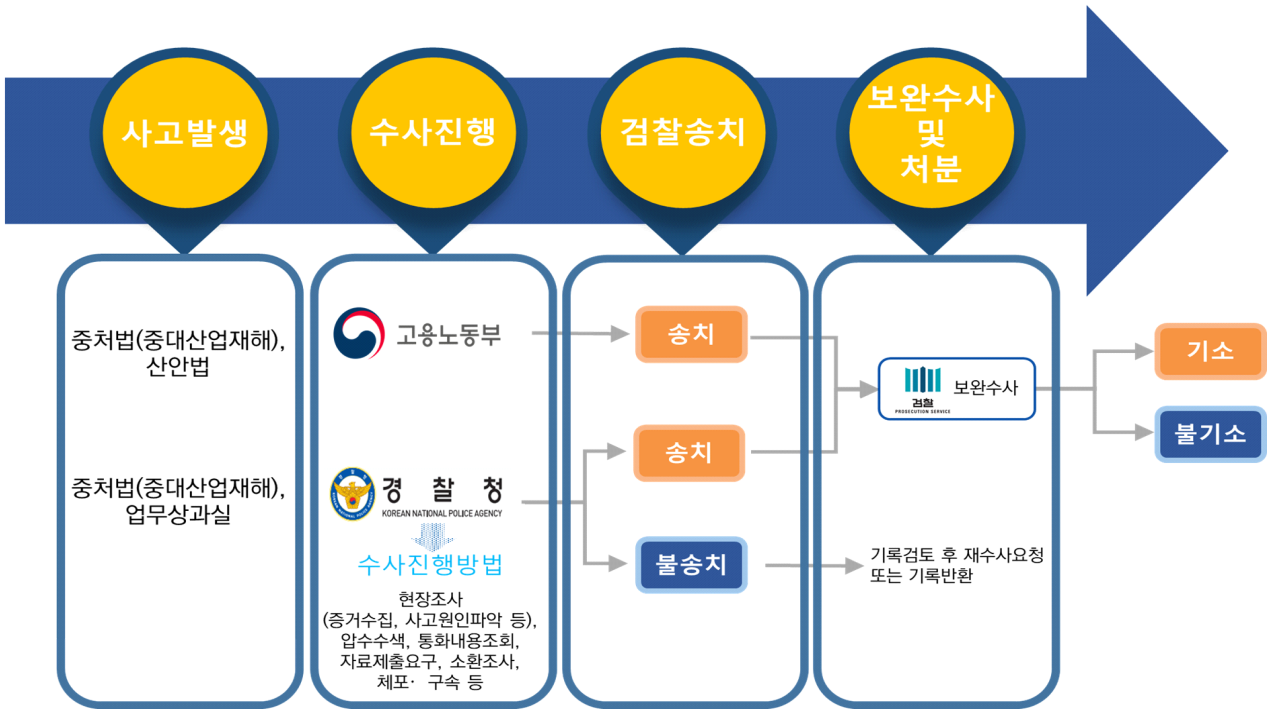


○ 초기에는 지방노동청과 경찰이 공동으로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고 당일 사업장, 본사 방문을 통하여 자료 임의제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변호인 입회 이전에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위반에 대한 내용 및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

○ 중대재해 발생 시 각 기관별 법적 조치 진행 절차





5.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가. 수사 대응의 중요성

- 형사절차를 통해 각종 책임관계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음
 - 형사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
 - 민사책임: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작업 중지 등에 따른 계약상 책임 등
 - 행정제재: 영업정지, 하도급 참여 제한 등
 -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기업 이미지 실추, 거래 제한 등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충실한 소명을 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 모드 필요

나. 수사 대응 요령

(1) 초기 수사 단계

① 현장조사

- 기관별 사고경위 파악 및 증거확보,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출입
 - 노동청(지방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 안전보건공단, 경찰(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경찰서 형사팀 등), 국과수, 지자체·국토부 등 기타 유관기관현장 출입관리 담당자 지정, 사고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소속, 성명, 출입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기록하여 수사 진행 상황 확인 필요
- 자료 임의 제출 요구
 - 수사기관 대응 담당자 지정, 수사기관 요청사항 응대 창구 일원화 필요
 - 현장에서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받더라도, 가급적 추후 사고 및 범죄혐의와의 연관성을 검토한 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 불가피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조직도, 인원현황, 사내규정 등)를 중심으로 제출하되,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하거나 원본 제출시 사본 보관
 - * 자료 사후 수정이나 가공은 절대 금지
 - 각종 서류, 전자정보(결재문서, 이메일 등), 소지품(핸드폰) 등 영장 없는 수색은 불법 현장 참고인 조사 또는 인터뷰 요구
 -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목격자 및 관련 부서 책임자 등 상대로 사고경위 및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진술조서 작성 등) 및 인터뷰, 진술서 작성 등 요구
 - ⇒ 수사기관 대응 담당자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인터뷰 요구시 피조사자 지원 및 상황 파악
 - ⇒ 사고 직후 피조사자는 정신적 충격 및 불안 상태에서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할 여유가 없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를 미루거나 변호인 조력 필요
 - ⇒ 만약 수사기관이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진술서 작성 의무 없으므로, 객관적 사실 외 의견평가 기재 진술서 작성은 신중 필요

②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의 교부

- 최근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사상자 수가 많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경우, 사회적 이목 집중의 경우 압수수색 가능
 - ⇒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의무
 - ⇒ 압수수색영장을 교부받은 경우 피의자, 범죄사실, 압수 대상장소의 범위, 압수방법 등의 확인 및 영장 내용에 따라 압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 ⇒ 압수 수색시 여러 장소에서 여러 피압수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압수자 등 참여자들에게 압수 대상범위 등 면밀히 확인하도록 조치서류, 물건 등의 압수

○ 서류, 물건 등의 압수

- 압수물은 향후 유죄의 증거가 되고, 참고인피의자 조사시 책임 추궁의 근거로 활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사본 보관 필요
- 책자, 수첩 등 사본이 용이하지 않고 분량이 많은 경우 수사기관이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만 사본 압수토록 협의
- 실무상 복사기를 충분히 구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압수된 서류나 물건은 수사기관 대응 담당자를 통해 취합관리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

○ 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

- 전자정보 또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파일 또는 키워드 검색으로 추출된 파일을 이미징하거나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도록 협의 가능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출한 전자정보는 수사기관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자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 필요(최종 압수물은 선별된 전자정보임)

(2) 수사 진행 단계

①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 조사

○ 조사 내용 및 답변 방법

- 참고인 조사의 경우 변호인 조력 가능하며, 사고경위 및 원인, 관련자들 임무와 역할, 관여 정도, 각종 의무위반 여부 확인,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실 확인 등 질문
-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기반으로 하는 답변은 지양(사실관계나 책임 소재가 왜곡될 가능성 우려)
- 피의자 조사의 경우, 범죄혐의 입증에 위하여 임의제출 또는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자료 관련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할 필요 조사 이후 조치
- 조사가 종료된 이후 조서 열람시 본래 진술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
- 참고인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공개청구 가능
(경찰은 대부분 공개, 노동청 및 검찰의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수사기관 조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반박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필요

② 사고 원인 분석

- 통상 국과수 및 안전보건공단 사고원인조사 결과(부검결과 등 포함)는 사고 발생 이후 1~2개월 경과시 수사기관에 통보
- 사고발생 원인에 따라 혐의인정 여부, 책임의 범위 및 대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3) 수사 종결 단계

①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의 신청 및 청구
 - 노동청과 경찰은 각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를 담당한 범죄혐의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 검사의 지휘를 받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는 달리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지휘를 받지 않으나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통상 검사, 노동청, 경찰이 사전 협의하에 진행
 -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청구받는 판사(주로 영장전담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 통지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는 법원 영장계에서 영장청구서 사본 등사 필요 단, 지정 일시까지 변론 준비가 어려운 경우 기일 변경 요청도 가능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통상 심문 시작 30분~1시간 전에 영장청구 검사실 등으로 출석
 -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됨 (기각시 석방)

② 송치 및 검찰 처분

- 수사기관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후, 노동청은 사건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경찰은 송치(혐의인정) 또는 불송치(혐의불인정) 결정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 절차

순 번	업 무	업무 처리 내용	비고
1	중대재해 발생	• 병원후송 • 장례식장 보유병원으로 하는 것이 용이	119 신고, 관할노동부 즉시 보고
2	현장정리	• 현장목적자 및 관련자, 진술서 확보 • 재해발생경위, 안전조치사항 여부확인 • 안전관련서류, 현장 확인 및 정리	
3	재해발생 보고	• 6하 원칙에 의거 재해발생보고 실시 • 지인 확보 및 현장 CLOSE	관할 경찰서
4	업무분담	• 영안실 대기조 편성 (2~3일 장지 포함) • 유족연락 및 식당, 숙소 확보(유족) • 사고보고서 등 서류작성 • 노동부, 경찰 담당자 우선 결정 및 지인 확보 • 산재신청, 재해보상합의 등 준비	
5	현장확인	• 경찰서 : 당일 현장방문, 목격자, 유가족, 관리감독자, 신병확보 및 조사 • 노동부 : 보고즉시 방문일정 수립하여 현장 조사 • 현장사진 및 안전서류 등 증거 확보 • 상황실 유지 : 현장주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행
6	중대재해 발생보고	• 노동부 양식의거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성, 보고	노동부
7	합의	• 병원도착 전 사망 : 사체검안서 10부 • 병원도착 후 사망 : 사망진단서 10부 • 유족대표와 합의 • 통상 2일째 ~ 3일째 합의 • 합의 완료 시 진정서 확보	병원
8	검사이회	• 변사 사건일 때 경찰서에서 당직검사에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휘 받음	검찰
9	장례	• 가급적 장지까지 직원이 동행요망 (진정서) • 현장소장, 직원 문상은 발인 하루 전이 통상적	상황에 따라 대처
10	참고인 조사	• 협력업체 소장, 반장, 목격자 • 원청사 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원인조사	기소대상, 적용법 파악
11	노동사범 지휘품신	• 관할 검찰청(주로公安부)에 적용법조항, 처벌대상, 처벌수위, 구속여부 등 검사에게 지휘신청 • 내사종결 여부	경미한 사건일 경우 생략
12	범죄인지 여부결정	• 참고인조사, 검사이회 품신 후 범위반 사실에 대해서 범죄인지 • 범위반 없을시 내사종결 확정	
13	범죄인지 (입건)	• 검찰청 발행 범죄 접수부 등재 • 주로 불구속 입건	이후 입건사실 변경불가
14	피의자 조사	• 입건된 피의자 대상 가족상황, 범위반사실 문답조서 • 경찰서, 노동부 등 출두 사고관련자 조사 • 합의서, 각종 안전서류 등 자료제출	경찰서 노동부
15	전과조회	• 범죄경력조회 • 양형 참작자료	노동부
16	사건송치	• 조사결과서로 사건송치서 작성 후 검찰(주로公安부)로 기소의견 송치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당검사 배정 (부장검사) • 구속가능성 있는 자 출국금지 조치 • 변호사 선임, 변론서 작성 등 적극적 대처 • 산안법, 업과사 병합여부결정 (피의자 및 사안검토)	검찰
17	무혐의확정	• 불기소이유고지서 제출 (노동부) • 본상에서 최종재해를 발표 전 노동부에 제출 • 관할 검찰 민원실에 요청 후 2일정도 소요 • 피의자가 직접방문 또는 위임인 방문 • 통상적 무혐의 확정시까지 3~4개월 소요 • 매년 6월경 재해를 집계, 7월경 발표함	검찰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보상 합의금 산정방법 예시

① 산재보험급여 산정

가. 산정방법

구분	내용
산재 보험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평균임금	•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피재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 •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 ※ 평균임금 = 일당 × 통상근로계수(73%)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 • 유족급여 = 평균임금 × 1,300일분 ※ 평균임금 최고·최저 금액 : 고용노동부 지급기준 고시 적용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 장의비 = 평균임금 × 120일분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 고용노동부 지급기준 고시 적용

나. 산정 예시

구분	내용
기본사항	• 피재자 배관공 사망 • 생년월일 : 1974.11.14. • 사고일시 : 2008.11.24. 08:30 • 사망일시 : 2008.11.24. 12:28 • 가동연한 : 2034.11.13.(312월 : 199.6158) • 평균임금 : ₩81,276.59/일 (₩100,000/일) • 시중노임단가(배관공) : ₩106,785 • 노동능력상실율 : 100% • 과실상계 : 30%
산정	• 유족급여 : 81,276.59(평균임금) × 1300일분 = 105,659,567원 • 장의비 : 81,276.59(평균임금) × 120일분 = 9,753,190원
산재보험급여	• 105,659,567(유족급여) + 9,753,190(장의비) = 115,412,757원

②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

가. 산정 방법

구분	내용
민사상 손해배상금	과실상계 + 위자료 + 장의비
일일수입	- 상용직 - 사망일로부터 가동년한까지의 손해액 (①+②) ① 월 손해액(1일 평균임금 × 30일) × 사망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호프만계수 × 노동능력상실율(100%) ② 월 손해액(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22일) × 정년일 이후부터 60세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호프만계수 × 노동능력상실율(100%) - 일용직 ①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22일 × 60세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호프만계수 × 노동능력상실율(100%)
생계비 공제	소극적 손해액(일일수입) × 2/3(생계비 1/3공제)
과실상계	- 생계비공제 × (100 - 재해자 과실율) ※ 사고경위를 판단하여 재해자의 과실을 공제 (변호사 자문, 손해보험회사 손해사정팀 담당과 협의, 판결 및 판례 참고)
이익상계	과실상계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장의비) +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기 지급한 금액]
위자료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율 × [1-(재해자 과실율 × 6/10)]
예상판결금	이익상계 + 위자료
합의예상금	예상판결금 × 80%

나. 산정 예시

구분	내용
기본사항	- 피재자 배관공 사망 - 생년월일 : 1974.11.14. - 사고일시 : 2008.11.24. 08:30 - 사망일시 : 2008.11.24. 12:28 - 가동연한 : 2034.11.13.(312월 : 199.6158) - 평균임금 : ₩ 81,276.59/일 (₩100,000/일) - 시중노임단가(배관공) : ₩106,785 - 노동능력상실율 : 100% - 과실상계 : 30%
산정	- 일일수입 : 106,785(시중노임단가) × 22일 × 199.6158(호프만계수) × 1(노동능력상실율) = 468,951,410원 - 생계비 공제(1/3공제) : 468,951,410(일일수입) × 2/3 = 312,634,273원 - 과실상계 : 312,634,273(생계비 공제) × [1 - 0.3(과실상계)] = 218,843,991원 - 위자료 : 80,000,000 × 1(노동능력상실율) × {1 - [0.3(재해자 과실율) × 0.6]} = 65,600,000원 - 장의비 : 3,000,000원
민사상 손해배상금	218,843,991(과실상계) + 65,600,000(위자료) + 3,000,000(장의비) = 287,443,991원

③ 합의 예상금 추정

- 산재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금 보다 클 경우
 - ☞ 합의예상금 = 산재 보험급여 + 위자료
-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산재 보험급여 보다 클 경우
 - ☞ 합의예상금 =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서식 38 수급인 선정 기준표 작성 및 서식

1. 수급인 선정 기준 작성

수급인 선정 기준표

수 급 업 체 명		평가일자 : 00. 00. 00.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5	3	1	
	계획수립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3	1	
실행수준 (40)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운영관리 (20)	연락체계	업체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의 구축	5	5	3	1	
	위험설비	유해·위험 기구·기계·설비 안정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5	5	3	1	
재해발생 (20)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20	10	5	
총 점							
등급판단							
◇ 평가등급 분류기준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0 ~ 89점, B등급 : 70 ~ 79점, C등급 : 60 ~ 69점, D등급 : 60점 미만							
※ 평가항목 4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 판정							
◇ 등급별 관리기준 (A등급 평가 이상 업체와의 계약만 가능)							
구 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점 검 자			확 인 자				
(서명)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식 39 도급, 용역, 위탁업체 계약내역 관리대장 서식

1. 도급, 용역, 위탁업체 계약내역 관리(필요 시)

도급, 용역, 위탁업체 계약내역 관리대장

구분	계 약 명 (기 간)	계 약 업 체 (계약일자)	계 약 내 역	확 인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서식 40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서식

1.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회사명)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0000. 0. 0.

주 소:

회 사 명:

사업주 등:

(인)

서식 41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 관리대장

1. 안전보건협의체 개최에 따른 결과 관리대장 작성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 관리대장

사업장명 :			점검일 : 년 월 일		
구분	일 시 (장소)	주 요 내 용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확 인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조치일	조치사항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개최					

서식 42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 및 결과 조치사항 관리대장 서식

1.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

1) 작업장 합동 점검표 (2개월 1회 이상) 작성

도급인·수급인 합동안전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개선요망 사항	비 고
				양호	보통	불량		
합동점검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도급인			(서명)	도급인 소속 근로자				(서명)
수급인			(서명)	수급인 소속 근로자				(서명)
점검결과 및 기타사항								
점검결과								
점검결과(지적사항)				점검결과(조치계획)				
사진설명				사진설명				
※ 2개월에 1회 이상 도급인 및 수급인 합동점검 ※ 사업장별, 공종별 특성에 맞게 점검항목 설정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2)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대장 작성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대장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내 역		개 선 내 역		확 인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점검일자	지 적 사 항	조치일자	조 치 사 항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서식 43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 서식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개선사항			
	적정	부적정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 수립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 선정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수립 여부		✓	공기 관련 평가기준 미비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 점검 여부 (반기 1회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 점검 여부 (반기 1회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사업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 점검 여부 (반기 1회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					
도급, 용역, 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종사자에게 공유 여부		✓	수급인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필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 실시 여부	✓					
도급, 용역,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 검토·확인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완료 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 결과 활용 여부	✓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참고자료 ⑱ 수급인 선정 기준·절차 마련

1. 수급인 선정 절차도 작성

수급인 선정 절차도		
계 약	① 도급사업 검토	• 도급인가 대상 검토 • 안전보건관리 규정화
	② 도급계약 입찰	• 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 수급인 선정 평가표를 통한 입찰업체 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 행	⑤ 도급·용역·위탁 업체 계약이행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정 • 안전보건협업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종 료	⑥ 도급·용역·위탁 업체 평가	• 안전·보건업체 평가

2.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현장

2.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도급인 사업주 + 수급인 사업주 전원
운 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결과 기록·보존
협의사항	• 작업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 작업장 순회점검(건설현장의 경우 2일 1회 이상)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 거부, 방해, 기피는 불가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도급인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필요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발파,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협조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운 영	(건설업) 2개월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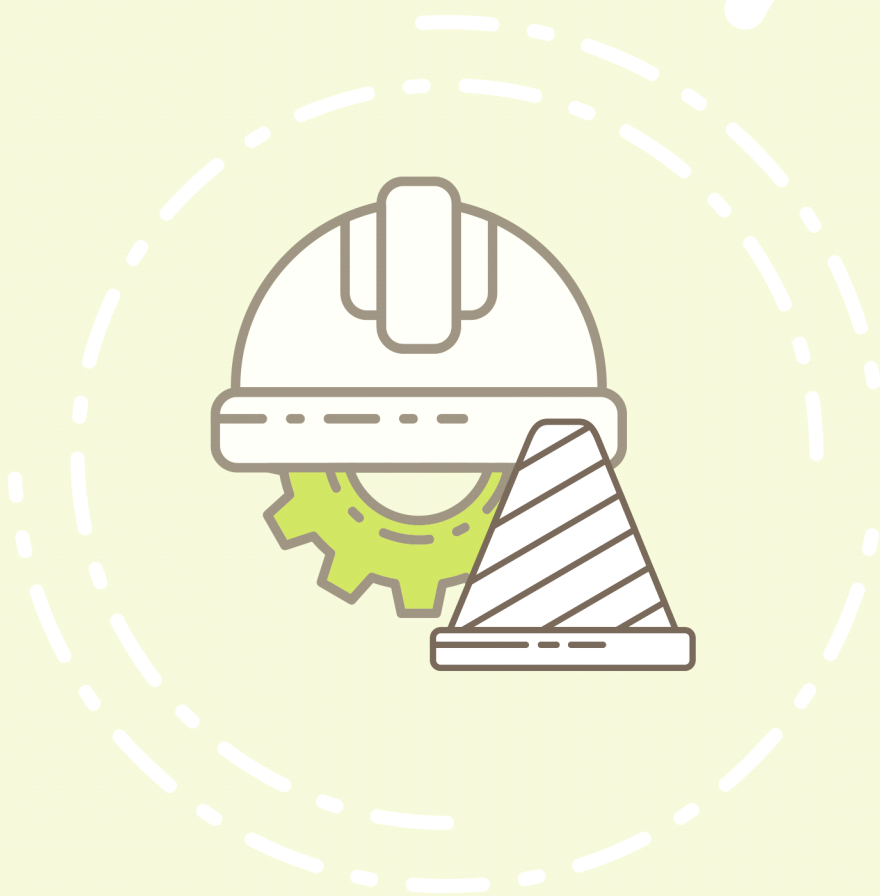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 확인
- 다수의 협력업체 작업 시 인근 협력업체의 작업 내용, 시간 등 안내

3. 안전보건정보 제공

- 폭발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인 경우
- 위 작업에 따른 설비 내부에서 시행되는 작업인 경우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44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서식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전화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내부보고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건설업)

사업장명 :				보고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원 청 (공동도급)	(대표 :)	공사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기 지 관	술 도 계	- 지도기관명: ☐ 미계약 ☐ 해당없음 ☐ 대상 ☐ 비대상
	하 청	(대표 :)	근로자수 (명)	유해위험 방지계획 대상여부			
현장명	(소재지 :)		공정율(%)	발 주 처	공 종	사 류	
※ 공사종류는 형틀공사, 굴착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토공사, 전기공사 등 재해발생 공사 종류를 기재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종	입 사 일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 사망 ☐ 부상 (치료예정기간 개월)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 현황							
일 시	장 소	○ ○ 회 사 ○ ○ 작업장	발 생 형 태	기 인 물	비 고		
4. 재해발생 경위(6하 원칙)							
5. 조치 및 전망							
6. 기타 중요 사항							
ex) 산재보험 가입여부, 경찰서 조사관계 등							
위 보고인 사업장명/현장명 : 대 표 자/현장소장 : (인) 전화번호 : ☎ (휴대폰 :)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청 보고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 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 명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에상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발생개요및 원인	⑱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IV. 재발방지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공정		기인물 작업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45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및 계획 점검표 서식

1.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작성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사업장명 :			작성일자 : 년 월 일		
재해 일시			재해 장소		
현장 사진					
구 분		주 요 내 용			
재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종 : ☐ 재해정도 : 사망(), 부상(, 치료예상기간 일)			
재해발생 내용		☐ 일 시 : ☐ 장 소 : ☐ 발생형태 : ☐ 상해부위(종류) : ☐ 사건개요 :			
재 해 재 발 방 지 대 책 계 획	사고 원인 분석				
	재 해 방 지 대 책	기 술			
		교 육			
		관 리			
	안전관리 방안				
점검자			확인자		
(서명)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2.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 점검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개선사항			
	적정	부적정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 요인 파악 여부	✓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 가능 여부	✓					
본사·사업장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여부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의 갱신·관리 여부	✓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인적·물적) 포함 여부	✓					
비상조치계획에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여부	✓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구분 여부		✓	담당자 역할 분담 작성 필요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 표시 여부	✓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 여부		✓	사전방문을 통한 유관기관 협조요청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 여부 (반기 1회 이상)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 개선 여부	✓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점검자		확인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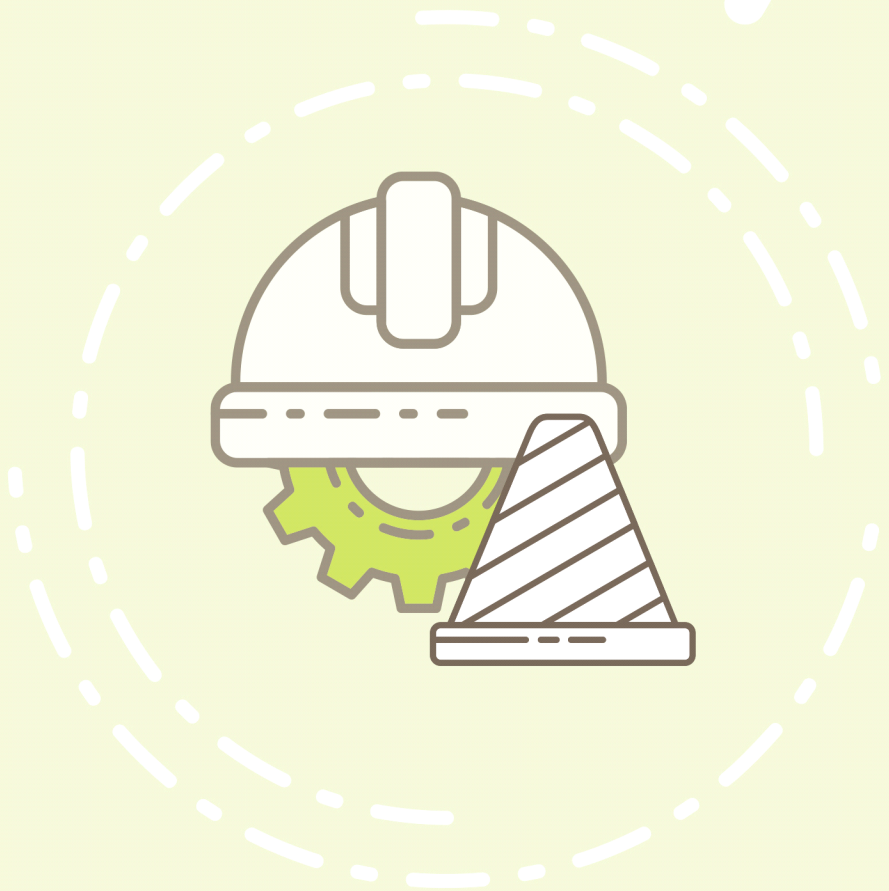
참고자료 ⑱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1.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도 작성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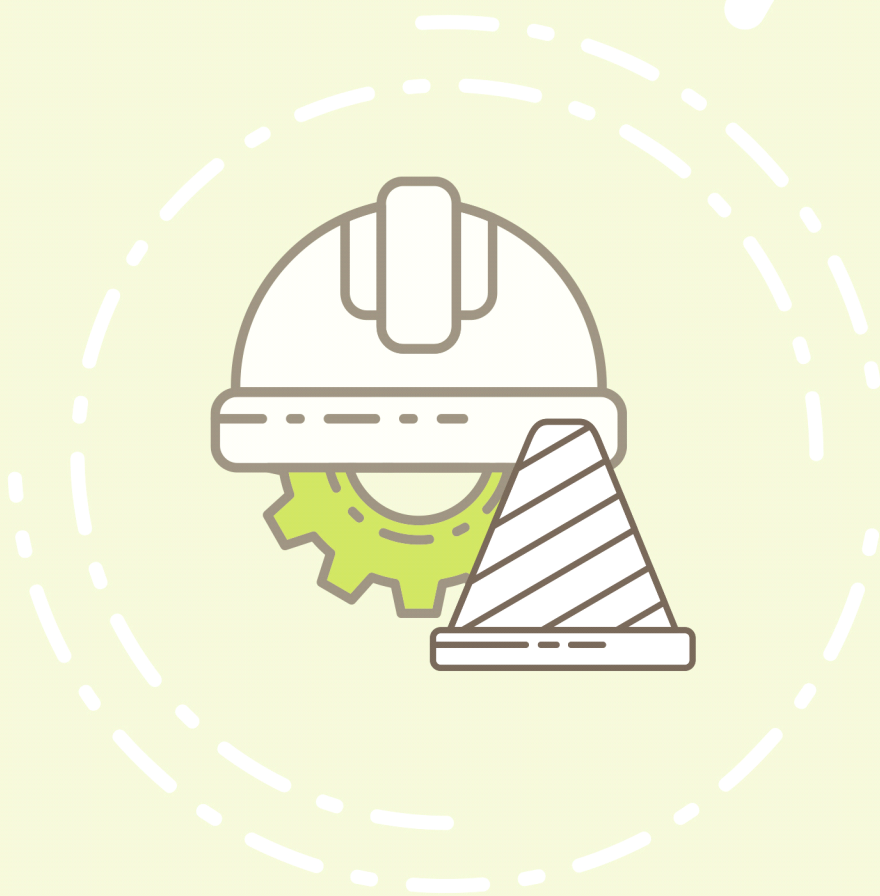
서식 46 개선·시정 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 서식

개선·시정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대장

사업장명 :							
구 분	점검일	행정 기관명	시정내용	시정 지시일	조치내용	조치일자	확인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1	00.00.00	□□□□□		00.00.00		00.00.00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4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의 무 내 용	점검결과		개선사항			
	적정	부적정				
「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승강기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종합점검 실시 여부						
「주차장법」 제19조의9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기 검사 실시 여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검사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						
• • •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서식 48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작성 서식

1.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서

사업장명 :		작성일자 :		년	월	일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일자	시간	강사	대상	장소
정기교육	1월 겨울철 작업 시 사고방지 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2월 해빙기 대비 공사 현장 안전보건 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3월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비 착용 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4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5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6월 중대재해 방지 예방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7월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보건 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8월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10월 작업 노동자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11월 보호구착용 및 관리요령	시청각 자료 등	00.00.00.	4시간		전직원	
	12월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교육	시청각 자료 등	00.00.00.	2시간		전직원	
채용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강의식 시청각 자료 등	채용 시	8시간		채용직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대한 교육	강의식 시청각 자료 등	작업배치 전	2시간		작업내용 변경직원	
직무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	외부교육		16시간		관리감독자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식 49 안전보건 교육 실시보고서 서식

1. 정기안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실시보고서

사업장명 :		교육일자 : 년 월 일		
구분	교육제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대상
정기안전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현장/위치		현장/위치		
실시자	(서명)	확인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2.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보고서

사업장명 :		교육일자 :		년	월	일
구분	교육제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대상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채용 시의 교육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시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현장/위치		현장/위치				
실시자	(서명)		확인자	(서명)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3. 작업변경시 안전교육

작업변경시 안전교육 실시보고서

사업장명 :		교육일자 : 년 월 일		
구분	교육제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대상
작업변경 시 안전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시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현장/위치		현장/위치		
실시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4. 특별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실시보고서

사업장명 :		교육일자 :		년	월	일
구분	교육제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대상		
특별안전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시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현장/위치		현장/위치				
실시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서식 50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및 실시여부 점검표

1.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보건교육참석자 명단

사업장명 :

교육일자 :

년

월

일

구분			교육제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실시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등)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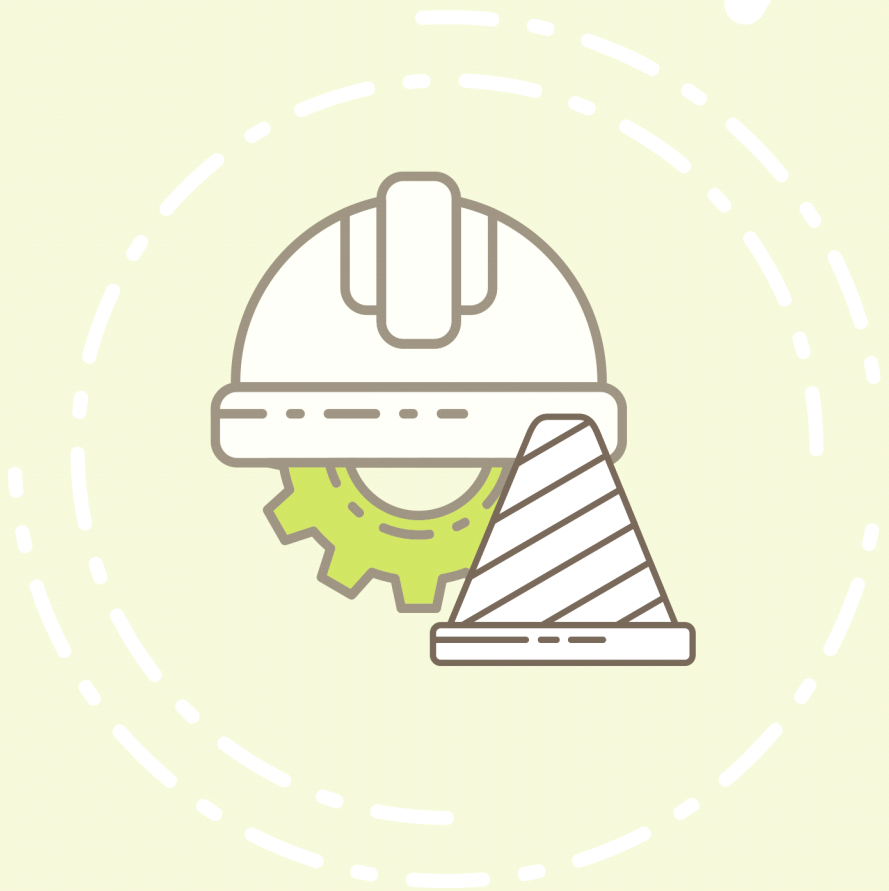
2.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개선사항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여부 (대상자 선정, 요구도 파악, 방법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여부 (신규 연 6시간 이상, 보수 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여부 (연 16시간 이상)	✓		
정기교육 실시 여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비사무직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실시 여부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해당사항 없음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		
안전보건교육 평가 실시 여부(만족도 등)		✓	교육참석자 만족도 평가표 미비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교육 추가 시행 ※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서명)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서식 및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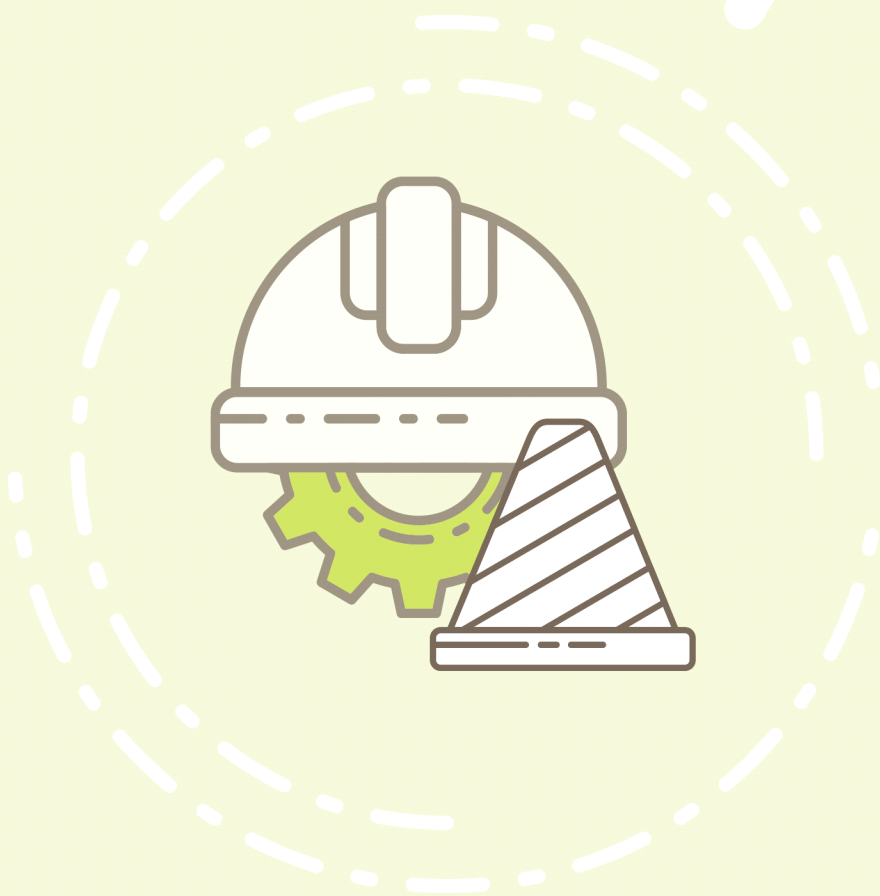
서식 51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사 항	해당여부		개선사항			
	해당	미해당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공유 여부 - 수급업체 이메일, 사내 게시판 등	√					
사업 또는 사업장 조직도 게시·공유 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여부 -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유해·위험요인 대책 등 공유	√					
- 안전보건표지 부착 또는 접근방지시설물 등의 설치	√					
- 유해·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예산편성 시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내역에 따른 집행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작업용 안전기구, 보호구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에 따른 담당자 및 담당업무 공유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담당자 및 담당업무 공유 여부	√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절차로 수급업체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					
중대재해 발생, 발생할 급박한 위험대비 대응·조치 매뉴얼 공유 여부 - 비상연락망, 재발방지 계획서, 비상대비 훈련 시나리오		√	비상대비 교육 훈련시 종사자 포함 필요			
- 비상대비 훈련 참가 및 교육	√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련 교육수료 확인 여부	√					
· · ·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서명)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52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 목록표

이행·조치사항 관련 서류 관리대장

사업장명 :				
서 류 항 목	보 존 기 간	해당여부		확인 (현장소장 및 사업주등)
		해당	미해당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 ○○ ○○-○○○ ○○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관련 (시행령 제4조 제2호)	○○○ ○○ ○○-○○○ ○○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3호)	○○○ ○○ ○○-○○○ ○○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를 위한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3호)	○○○ ○○ ○○-○○○ ○○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시행령 제4조 제4호)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충실성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5호)	○○○ ○○ ○○-○○○ ○○ ○○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충실성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5호)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수행 충실성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5호)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관련 (시행령 제4조 제6호)	○○○ ○○ ○○-○○○ ○○ ○○			
종사자 의견 청취 관련 평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7호)	○○○ ○○ ○○-○○○ ○○ ○○			
비상조치계획 수립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8호)	○○○ ○○ ○○-○○○ ○○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 제9호)	○○○ ○○ ○○-○○○ ○○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내용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 ○○-○○○ ○○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미이행 시 조치 내용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 ○○ ○○-○○○ ○○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내용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 ○○ ○○-○○○ ○○ ○○			
안전·보건 교육 미이행 시 조치 내용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 ○○ ○○-○○○ ○○ ○○			

참 고 자 료

1.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 5.
2.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2023. 6.
3.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2023.1.31.
4. 고용노동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2022. 3. 16.
5.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6.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2021. 11. 17.
7.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부문, 2022. 1. 18.
8.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2022. 3.
9.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2. 2. 18.
10.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2021. 12.
11.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2021
12.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2022. 4.
13. 서울특별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2022. 1. 26.
14. 한국전기공사협회 재해예방기술원, 전기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2019. 6.
15.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위험성평가 모범사례, 2022. 10. 6.
16.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가이드, 2022. 3.
1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2021. 12
1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 2022. 6. 3.

중소전기공사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지침서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인 장현우

편집인 김병기

발행처 한국전기공사협회 기획처 법령제도팀

편집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시공연구실

검토기관 법무법인(유) 율촌

자문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원

노무사 이동현

문의처 한국전기공사협회

기획처 법령제도팀

TEL : 043-711-4035

FAX : 043-711-4029

주의사항

- 본 가이드북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게재,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책 자 명 : 중소기업공사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지침서

발 행 인 : 장 현 우

편 집 인 : 김 병 기

발 행 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기획처 법령제도팀

TEL : 043-711-4035

FAX : 043-711-4029